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Development of Tax Attitude index :
Public Opinion Survey in korea

2008. 12.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서 언

최근 국내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해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향후 재정여건과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 및 정책,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지수의 개별지수를 개발·점수화하였고 이러한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납세의식의 향상과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의 검토를 위하여 실제 납세순응행위가 주관적인 납세의향 및 조세이해도, 형평성에 대한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실제 납세 순응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납세의식지수의 연도별 흐름의 추적을 통한 조세관련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정책평가 연구에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국내외 재정학계나 정책결정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태 및 납세의식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많이 참조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박명호 박사와 김봉근 성균관대 교수 및 김정권 이화여대 교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구의 시작부터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현진권 아주대 교수에게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 박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단계별로 저자들을 도와준 본원의 조문경 연구원, 최미영 주임연구행정원, 이남희 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제적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 인하 및 고유가에 따른 유가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소득세 및 재산세제의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서 최근 고유가 등에 기인한 급속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재정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넓은 세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향후 세입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통하여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 조세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gap)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막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벗어나서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단시일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및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정확한 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위의 광의의 납세의식을 세부적으로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납세순응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로 분리하여 정의하여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지수를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는데 있다.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의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지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소득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여부를 종합한 지수이다. 성실납세의향지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 양자를 합해 개인별 지수를 구한 것에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변수들의 정보를 종합한 지수이다. 납세순응도지수는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

위지수와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 지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조세이해도, 납세순응도, 조세제도 형평성 변수, 인구통계특성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문지 문항을 설계하였고 전국 16개 시·도별로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2,399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2008년 5월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분할그룹(segmentation)마다 할당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지수 (실제순응행위지수 및 가상순응행위지수)라는 개별지수를 개발·점수화하였고 이러한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측정 방법론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론은 납세의식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조세이해도, 형평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질문들을 종합해

납세의식지수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나아가 납세의식의 고취와 납세순응행위도의 재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납세순응행위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이해도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2점을 보이고 있다. 조세형평도지수는 조세이해도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100점 만점에 46.1점의 평균값을 보였다. 성실납부의향지수는 조세형평도나 조세이해도보다 높은 69.0점의 평균값을 보여, 3명중 2명 이상은 성실납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을 묻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서는 평균 94.6점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납세비순응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순응행위지수가 성실납부의향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성실납부의향은 낮아도 실제로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세원투명성 등의 이유로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대체변수로 상품구매시 현금지불을 통한 할인이나, 가상적인 자영업주로서 현금매출액의 신고누락과 같은 가상납세상황에서의 가상순응행위지수도 추정하였다. 동 지수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 비해 훨씬 낮은 평균 32.6점을 보였다. 실제 납세순응행위와의 큰 격차는 본 설문지에서의 가상 납세순응행위 질문들이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적발 가능성 및 처벌에 대한 두려

움으로 행하는 소극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 납세상황 속에서는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사점은 많은 납세의식 설문조사에서 실제 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 가상 납세순응행위 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발견된 두 행위상 큰 격차는 이러한 분석들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납세의식조사를 통한 조세정책평가방식에서 위의 차이를 분명히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총괄 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총괄납세의식지수는 개별지수를 작성하듯이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해 앞에서 설명한 4가지 개별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괄 납세의식지수의 평균값은 78.4점이며, 고소득, 고학력,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개발된 지수를 통해 일차적인 설문조사의 요약보다는 정확한 조세정책 환경과 정책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방법론에서 언급하듯이 보다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질문내용이 추가된다면 지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납세의식지수의 연도별 흐름을 추적하여 조세관련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방법론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목 차

I. 서 론	16
II. 문헌조사 및 설문지 설계	20
1. 개요	20
2. 문헌 연구	22
가. 분석적 연구	22
나. 실증연구	26
다. 설문연구	37
3. 설문지 설계	50
III.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54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54
2. 기술통계량 요약	56
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 변수	56
나. 납세의식지수 관련 변수	59
3. 납세의식지수	65
4. 납세순응행위 실증분석	75
IV. 결론 및 시사점	80

참고문헌 84

부 록 92

표 목 차

<표 III-1> 표본구성 요약	5
<표 III-2> 인구통계학적 변수	6
<표 III-3> 연평균 소득수준 분표	8
<표 III-4> 조세이해도, 형평도, 납세의향, 순응행위도 지수 기술통계량	72
<표 III-5> 인구특성변수별 개별지수 기술통계량	7
<표 III-6> 총괄납세의식지수 결정모형 구조도	7
<표 III-7> 인구특성변수별 총괄납세의식지수 기술통계량	7
<표 III-8>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7
<표 III-9>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외생변수 포함	7
<부표 2>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인지도	18
<부표 3> 고가주택 기준금액에 대한 인지도	10
<부표 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최저 금액에 대한 인지도	12
<부표 5>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	14
<부표 6>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 의향	17
<부표 7> 가상 상황에 대한 태도	12
<부표 8> 소득 축소신고 / 공제 과다계상 경험 여부	15
<부표 9>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여부	18
<부표 10> 매출축소 신고 /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여부	13
<부표 11>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2
<부표 12> 불성실납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	14

<부표 13>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인	136
<부표 14>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	139
<부표 15> 정부 혜택 수준	141
<부표 16> 세부담 수준	143
<부표 17> 세금 관련 의견	145
<부표 18> 최고치를 100점으로 한 조세이해도, 형평도, 납세의향, 순응행위도 지수 기술통계량	160
<부표 19> 조세이해도, 형평도, 납세의향, 순응행위도 원변수의 기술통계량	160

그 립 목 차

[그림 III-1] 연평균 소득수준	57
[그림 III-2] 납세행위 결정모형 구조도	76
[부도 1] 조세 이해도	105
[부도 2]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인지도	107
[부도 3] 고가주택 기준금액에 대한 인지도	109
[부도 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최저 금액에 대한 인지도	111
[부도 5]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	113
[부도 6]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 의향	116
[부도 7]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 매출 1천만원에 대한 성실 납세 의향	120
[부도 8] 할인조건 제시시 현금 지불 의향	121
[부도 9] 소득 축소신고 / 공제 과다계상 경험 여부	124
[부도 10]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여부	127
[부도 11] 매출축소 신고 /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여부	129
[부도 12]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1
[부도 13] 불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3
[부도 14]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5
[부도 15]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	138
[부도 16] 정부 혜택 수준	140
[부도 17] 세부담 수준	142
[부도 18] 세금 관련 의견	144

I. 서론

최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제적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 인하 및 고유가에 따른 유가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소득세 및 재산세제의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재정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넓은 세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향후 세입 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등 광범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세원 투명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성실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그 결과 2006년과 2007년의 국세징수실적은 세입예산보다 각각 2.7조원과 14.2조원을 초과하여 최근 시도되고 있는 감세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

1) 2006년 대비 2007년 자진납부 실적 증가율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30.4%, 법인세는 12월말 법인기준으로 1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추가적인 세목 도입이나 세율 인상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조세 정책도구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를 통한 세원 확대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도구의 적극적 활용은 사실상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 납세순응도를 제고하여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 조세수입과 자진신고세액 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gap)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 요인은 크게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분리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 등의 납세불순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된다. 한편, 비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납세의식 또는 조세문화(tax culture)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연구한 다수의 문헌들은 낮은 세무조사 비율 등으로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많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만으로는 납세자들의 납부행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의식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납세자들의 납부행태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Reckers et al. (1994), Wenzel(2002) 및 Frey & Feld(2002) 참조).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막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벗어나서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단시일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및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때 사용할 설문지의 설계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지수의 생성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부록 1>에 첨부된 설문지를 설계한 후 전국 16개 시·도별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일반국민 총 2,399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설문지 질문 중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한다. 본 방법론은 납세의식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조세이해도, 형평도, 성실납세 의향, 순응행위 여부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질문들을 종합하여 납세의식지수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① 조세이해도지수, ② 조세형평도지수, ③ 성실납세의향지수, ④ 실제순응행위지수, ⑤ 가상순응행위지수라는 5개의 개별지수를 개발·점수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앞의 네 가지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⑥ 총괄납세의식지수를 추정하고 있다.

이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이해도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2점을 보였다. 조세형평도지수는 조세이해도지수보다 낮은 46.1점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성실납부의향지수는 조세형평도나 조세이해도보다 높은 69.0점의 평균값을 보여, 3명 중 2명 이상은 성실납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을 묻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서는 평균 94.6점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납세비순응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적발의 가능성이 없는 가상순응행위 지수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 비해 훨씬 낮은 평균 32.6점을 보였다. 이처럼 실제순응행위지수가 성실납부의향지수나 가상순응행위지수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성실납부의향은 낮아도 실제로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세원 투명성 등의 이유로 수동적 또는 비자발적인 순응행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괄납세의식지수의 평균값은 78.4점이고 고소득자, 고학력자,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 보고서에서는 납세의식과 관련된 여러 지수들 간의 상호관계와 이들 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 특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제 납세순응행위 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납세의식의 고취와 납세순응행위도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납세의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계측하기 위한 설문지를 설계한다. 제Ⅲ장에서는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기술 통계량 요약, 납세의식지수 생성, 납세순응 실증분석 등의 설문 결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부록에서는 금번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 차후 연구에 사용될 기본 설문조사체계 및 조사 결과의 기술 통계량 및 표본할당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II. 문헌조사 및 설문지 설계

1. 개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궁극적으로 납세순응행위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연구는 납세순응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이론을 근간으로 한 분석적 연구(analytical research) 및 사회 심리적 요인을 연구한 조세심리학 연구와 같은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개별신고자료, 실험자료 및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는 변수들은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위험회피 성향 등과 같은 개인적인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무조사비용, 가산세율,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세율, 납부한 세금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아울러 이러한 조세정책 변수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즉, 불확실성, 모호성 혹은 복잡성)는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감소 혹은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경제적인 요인으로서는 납세윤리, 탈세에 대한 허용도 등과 같은 성실납세 의향과 조세 형평성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도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가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비경제적인 변수로는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납세의 반대급부인 공공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제고와 조세윤리 제고를 통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납세순응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율, 세무조사비용, 가산세비용, 소득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각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납세의식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 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이것은 조세체계 내부에 작동하는 제도적인 변수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수들은 세무조사비용, 가산세율, 세율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또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것은 조세체계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조세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문화, 교육, 경제상황, 사회계층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들은 서로 밀접한 상승작용을 통하여 조세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요인은 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 및 종류, 직업, 결혼여부, 지역,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들도 아울러 포함한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조세부담의 적정성, 공정성,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이 납세의식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의식은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성실납세의향

및 납세순응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조세이해도는 납세자의 조세제도에 대한 인지도이며, 조세형평도는 현행 조세부담 및 공공서비스를 통해 인지하는 형평성 정도를 나타내며, 성실납세의향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을 포괄하고 있으며, 납세순응도는 행동으로 표출된 납세의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특히 납세의식을 구성하는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납세의향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적 연구, 실증연구 및 설문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설계하게 된다.

2. 문헌 연구

가. 분석적 연구

Allingham과 Sandmo(1972), Srinivasan(1973) 등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석적 연구는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세무감사비율, 가산세율, 세율, 소득, 위험선호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조세포탈(tax evasion) 혹은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근거한 추가적인 많은 연구들은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탈세를 단순히 특별한 형태의 도박이라고 인식하여 분석한 점에서는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는 적발될 확률과 탈세자에게 부과되는 징벌 수위를 감안하여 본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가장 최적의 탈세수준을 결정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적 연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취하는 조세정책이란 단지 법집행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산문제와 징벌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도를 감안하여 가장 최적의 정책 변수의 수준을 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Spicer, 1986). 즉,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 등의 과세 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고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어 이 세원에 대한 세금과 징벌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들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분명한 결론은 세무조사비용 및 가산세율은 납세순응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Allingham과 Sandmo, 1972; Srinivasan, 1973; Christiansen, 1980). 특히, Christiansen(1980)은 탈세를 통해 얻는 기대이익이 같아지는 범위에서 가산세율을 높이되 세무조사비용을 낮추는 정책방향이 세무비용을 높이고 가산세율을 낮추는 정책보다 탈세를 더 줄이는 방법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세무조사비용을 높이는 방법은 조세공무원의 확충과 같은 비용이 많이 들고, 가산세율의 증가는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에서 이 두 정책변수의 변경은 제한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과세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려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려는 데 있다 하겠다.

중요한 정책변수 중의 하나인 세율(tax rate)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이론은 명확한 예측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산세율(penalty rate)이 누락된 소득금액이 아닌 탈

세금액에 적용되고 아울러 납세자의 절대위험회피성향(absolute risk aversion)이 부(wealth)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거나 혹은 감소한다면(즉, constant absolute risk aversion 또는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는 상쇄되어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따라 세율 증가와 납세순응도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예측하고 있다(Yitzhaki, 1974).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반직관적일 뿐 아니라 신고자료 및 실험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 결과는 대체로 그 반대인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Clotfelter 1983, Collins and Plumlee 1991).

소득 수준(income level)과 납세순응도 간의 관계도 역시 납세자의 절대위험회피성향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위험회피성향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가정인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한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하여 납세자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탈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도출된다(Allingham과 Sandmo, 1972). 즉, 만약 절대위험회피성향이 감소한다면,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는 탈세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세무당국은 소득이 가장 높은 납세자군(즉, 이론적으로 가장 탈세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납세자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변수들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이론의 일반적인 예측은 때로는 반직관적이거나 혹은 실제적인 납세순응행위에 대해 제한적이고도 약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이론의 예측력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Graetz, Reigbaum, and Wilde(1986)은 세무조사비용 등과 같은 모든 경제적 요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를 예측하는 기존의 경제모델에 추가적으로 세무당국의 정책변수 선택 결정을 내생변수로 포함하는 게임이론을 소개하였으며, Alm(1988), Beck and Jung(1989) 등은 조세부채 및 세무조사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Beck and Jung(1989)은 소득의 불확실성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뿐 아니라 가산세율과 세무조사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예측하였다. 이 연구들은 전통적인 경제연구에서 납세자는 경제변수에 대해 완벽한 정보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가정을 분석적으로 완화한 점에서 이해도가 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Kolm(1973), Gottlieb(1985), Falkinger(1988), Cowell and Gordon(1988) 그리고 Cowell(1990) 등은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같이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공재(public goods)의 형태로 혜택을 받는 경제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공공재가 갖는 경제적인 유인뿐 아니라 교환 형평성에 대한 심리적 유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납세순응행위를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과 위험회피도에 의거한 위험한 의사결정(risky decision making)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석적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완전한 이성(perfect rationality) 가정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모호성도 없는 완전한 이해도를 보인다고 가정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순응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이는 실증자료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의 약한 설명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Dean, Keenan and Kenney(1980)는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경제모델의 예측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납세의식을 연구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나. 실증연구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경제이론의 예측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는 주로 개별신고자료 및 실험자료의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비용, 가산세율, 세율 등과 같은 정책변수를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납세자들의 개별신고 자료를 사용한 실증연구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보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연구는 자메이카 자료를 이용한 Alm, Bahl, and Murray(1993) 외에는 대체로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이 수집한 실제보고 자료를 연구용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Clotfelter, 1983; Slemrod, 1985; Porterba, 1987; Durbin and Wilde, 1988). Cuccia(1994)는 Clotfelter(1983)의 연구로 대표되는 개별신고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와 Friedland, Maital and Rutenberg(1978)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험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잘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제신고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연구(econometric research)를 대표하는 Clotfelter(1983)는 1969년도 TCMP자료를 분석하여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과 소득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부(-)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득수준의 영향은 경제이론의 예측과 일치하고 있지만, 한계

세율의 영향은 전통적인 경제모델(Yitzhaki, 1974)뿐 아니라 게임 모델(Graetz, Reinganum, and Wilde, 1986)의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Porterba(1987)의 연구도 세율과 보고이익은 음(-)의 관계라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CMP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사군들에 대해 각각의 회귀모델(regression models)을 추정한 Witte and Woodbury(1985)는 경제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실제 세무조사비용이 납세순응도와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TCMP자료와 같은 실제신고자료는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문제뿐 아니라 신고자료가 안고 있는 다른 다양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TCMP세무감사는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누락된 소득을 적발해 낼 수 없고 또한 납세비순응이 고의적인지 혹은 실수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Fisher, Wartick and Mark, 1992; Alm, 1991). 또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연구는 분명한 인과관계를 예측하고 있는 경제이론과 달리 단순히 상관관계를 검증한다는 문제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제 신고자료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변수들과 조세순응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을 위하여 실험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실험연구는 개인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Davis and Holt, 1993). 특히,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실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험연구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피실험자들이 직면하는 조세제도와 인센티브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고려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조세정책들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세정책연구에 있어서 실험방법론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는 Davis and Swenson

(1988)이 잘 분석하고 있다.

납세순응 분야에 있어서의 실험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이 통제되거나(controlled) 조작된(manipulated) 실험 환경에서 피실험자들이 본인만 알고 있는 소득 중 얼마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낼 것인지 결정하는 과제의 결과를 통해 조작된 변수들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러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누락한 소득 및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적발될 확률이 있고 또 적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실험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실험자는 실험이 끝나면 자신의 납세 후 누적된 소득에 따라 지불받게 된다는 점에서 피실험자는 실제 세무보고 상황에서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존재는 실험연구를 설문연구와 구분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납세순응 분야에 있어서 실험연구는 Friedland et al.(1978)에 의해 시작된 이래, 주로 분석적 연구에서 예측하는 정책변수들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세율과 처벌 수위의 변화에 따른 납세순응도를 연구한 결과, 처벌 수위는 납세순응도와 양(+)의 관계를 가진 반면에 세율은 경제이론의 예측과 달리 납세순응도와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처벌 수위가 세무조사비용보다 더 중요한 억제수단이라는 결과를 관찰하였는데 이는 Christiansen(1980)의 분석적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lm, Jackson, and McKee(1992a)는 세율, 감사비용, 가산세율, 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가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세무조사비용이 납세순응도를 높인다는 경제이론의 예측 및 Witte and Woodbury(1985)의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소득의 증가가 납세순응도를 증

가시키는 반면 세율의 증가는 납세순응도를 낮추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계량경제학적 연구(Clotfelter, 1983; Witte and Woodbury,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대부분의 분석연구에서의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Kim, Evans and Moser(2005)는 세율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의 예측과 실증연구의 결과와의 불일치는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교환형평성의 영향이라고 추정하였다.

초기의 실험연구들은 분석 연구의 예측이 실증자료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실험연구들은 조세이해도와 조세형평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실험에 포함하여 어떻게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제한하는지를 아울러 연구하게 되었다.

납세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조세이해도는 납세자들이 접하는 불확실성 혹은 복잡성을 그 추정변수로 삼아 연구되었다.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명확한 세법(tax code), 세법의 잦은 변경, 세무감사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무지(ignorance), 세무공무원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모델은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조세순응을 높인다고 예측한다(Beck and Jung 1989). 미국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이러한 예측에 따라 세무감사 선택 과정에 고의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Alm, Jackson, and McKee 1992b), 설문연구도 납세자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Yankelovich, Skelly, and White, Inc. 1984).

Spicer and Thomas(1982)는 세무감사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으며, Beck et al.

(1991)은 Beck and Jung(1989)의 분석적 연구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방법론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불확실성이 납세자의 보고이익을 높인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분석적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Alm, Jackson, and McKee (1992b)는 불확실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납세순응은 세수(tax revenue)의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들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공공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성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하였다. 이들은 세율, 세무감사비율, 가산세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Alm et al. (1992b)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약 납세자들이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경제모델의 예측과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불확실성이 클수록 납세순응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오히려 납세순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차이는 공공서비스는 모든 납세자들의 납세에 의해 결정되므로 납세자들은 자신의 납세순응 결정시 다른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결정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세율에 대한 불확실성은 납세자 전체의 납세순응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서 결국 개별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세무감사비율, 가산세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세포탈자에 대한 처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납세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성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형평이론(equity theory: Adams 1963)의 주장을 그 이론적인 근거

로 삼고 있다. 형평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기여도와 타인의 기여도 간의 비율로 평가한다. 둘째, 만약 그 비율이 같지 않다면 불공평이 존재하게 된다. 셋째, 개인이 그 관계에서 인식하는 불공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넷째, 개인이 느끼는 그 고통이 클수록 그는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고통을 줄이려 한다.

형평이론을 납세환경에 적용하면 납세자는 납세순응 결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평성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소득군의 평균 납세 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자신과 다른 소득군의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자신의 납세수준과 납세에 대해 반대급부로 정부로 받는 공공서비스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교환 형평성(exchange equity)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다른 납세자들의 납세수준에 비교한 자신의 납세수준, 그리고 자신의 납세수준에 비교하여 정부로 받는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조세형평성을 인지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납세수준에 비교하여 자신의 납세수준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수평적 형평성 혹은 수직적 형평성의 침해), 혹은 자신의 납세수준에 비교하여 정부로 받는 공공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교환 형평성의 침해), 납세자는 조세불공평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 불공평이 클수록 납세자는 탈세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납세수준을 줄임으로써 이 불공평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Spicer and Becker(1980)는 수평적 형평성과 조세포탈과의 관계를 최초로 실험방법론을 채택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서는 모든 피실험자에게 동일하게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전체 피실험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세율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함으로써 피실험자들이 인지하는 수평적 형평성을 조작하였다.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평균세율이 자신의 세율보다 높은 65%라고 통보받은 피실험자군은 탈세수준이 가장 낮았던 반면, 평균세율이 자신의 세율보다 낮은 15%라고 통보받은 피실험자군의 탈세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인 유인이 전혀 없는 수평적 형평성이 조세포탈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Webley, Robben, and Morris (1988)는 피실험자들이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피실험자 간에 단순히 통보받은 평균 보조금액만 다른 실험 상황에서 수평적 형평성과 조세포탈과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Moser, Evans, and Kim(1995)의 연구도 수평적 형평성과 보고소득과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수평적 형평성이 낮은 환경에서의 납세자들은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이론의 예측과는 반대로 오히려 보고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수평적 형평성이 높은 환경에서의 납세자들도 경제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세율이 증가하여도 보고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납세순응 결정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수평적 형평성뿐 아니라 교환형평성도 고려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Moser et al(1995)의 연구 결과의 후속 연구인 Kim(2002)의 실험연구는 각 납세자가 받는 공공재의 수준이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 수준과 독립적인 상황에서 공공재의 수취는 소득 증가의 영향과 유사하게 오히려 보고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무보고시 교환형평성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오히려 보고하는 소득의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정책변수인 세율(tax rate)에 관하여, 경제이론(Yitzhaki, 1974)과 신고자료 및 실험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Clotfelter, 1983; Collins and Plumlee, 1991)는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예측과 실증연구 결과와의 불일치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연구(Kim, Evans, and Moser 2005)에 의하면 세율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일치는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는, 세율의 증가가 납세순응에 주는 영향은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방향과 같이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험 후 설문조사 자료(post-experiment questionnaire data)에 따르면, 피실험인들은 형평성이 자신들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경제적인 요인(즉, 세율)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학적인 요인(즉, 교환 형평성)에 의해서 저해되고 있는 한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인지하는 조세부담이 클수록 조세 형평성을 통한 납세의식이 낮아져서 그 결과 납세순응도가 저해된다고 볼 수 있다.

Alm, Sanchez, and Juan(1995)은 납세순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요인과 비경제요인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저자들은 세무조사비율, 가산세율, 세율, 세금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재, 낮은 세무조사비율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overweighting), 그리고 사회규범(social norm)을 검토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납세순응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세무보고 대행자의 사용, 원천징수 여부,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 조세법에 대한 사면 가능성 등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 사회규범의 영향은 동일한 실험을 미국과 스페인의 피실험군에 적용함으로써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는 미국 피실험자들의 납세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실험실 환경하에서 단순히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피실험자군의 납세순응도가 다르다는 결과는 사회규범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원한다고 저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처벌(legal control)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social control)도 역시 조세포탈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chwartz and Orleans (1967)는 납세순응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법적 처벌과 양심에 대한 호소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두 방법이 모두 납세순응을 증진시키지만, 양심에 대한 호소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Alm, McClelland, and Schulze(1992)는 공공재의 수준이 자신의 납세수준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의 납세수준에 의해 아울러 결정되는 경우, 납세자들의 납세수준은 과거의 다른 납세자들의 납세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납세자가 탈세가 만연하다고 평가하면 자신의 납세수준을 줄일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의 실험연구인 차길녕과 도상호(2006)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평균신고소득률이 납세자의 소득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행 조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상황에서는 평균신고소득률을 제시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의 신고를 유도하였다. 또한 피실험자들은 실제 소득보다 높은 평균신고소득률이 제시될 경우에 실제 소득과 같은 평균신고소득률이 제시된 경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균신고소득률의 통보와 같은 관리적인 조세정책보다는 조세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탈세가 커진다는 인식이 만연될수록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진권(2001)은 경제학의 기본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수단들인 세무조사 선정비율과 가산세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납세자가 위협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이 수치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근본체제인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순응수준이 점차로 감소하는 실태는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따라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연구가 정책입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납세순응수준에 대한 통계 발표와 아울러 신고자료와 실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진권과 박창균(2001)은 세무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특히 실험 자료를 이용한 연구방식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세무조사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은 먼저 이론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선정대상 비율과 가산세 수준이 납세순응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현진권(2001)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납세자들이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은 이러한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들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비율, 가산세율, 소득세율 등과 같은 정책변수뿐 아니라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한 공공재의 존재, 그리고 성실납부의 필요성 등

조세의 사회적 규범성을 강조한 납세교육 등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방법론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실험자료 분석은 세무조사 선정비율과 가산세율은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이며 특히 가산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의 기본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정책수단들 즉, 가산세 정책, 납세자들의 납세인식 제고정책, 홍보정책 등의 조화가 납세자들의 순응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가지고 저자들은 세무당국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납세자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무당국의 정책적 고민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은 납세순응을 높인다는 분석적 연구의 예측(Alm, 1988; Beck and Jung, 1989)과 선행 실험 연구 결과(Spicer and Thomas, 1982; Beck et al., 1991)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실험 분석은 또한 성실납부의 필요성 등 조세의 사회적 규범성을 강조한 납세교육이 순응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납세교육은 단지 15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정책은 순응도에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 측면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저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통계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신

의 납세순응보다 통계정보에서 제공된 평균적인 납세순응이 낮음을 깨달은 경우, 납세자들로 하여금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오히려 납세순응이 줄어드는 위험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시한 연구들은 아래의 설문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다. 설문연구

납세의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납세행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연구방법론이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획득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비경제적 요인들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의 주장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사회학적인 접근을 채택한 선행 설문연구들은 연령 및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 조세 형평성, 납세윤리, 탈세에 대한 허용도 등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Jackson and Milliron(1986)이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연구는 납세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인 인구통계적 항목으로서 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 및 종류, 직업, 결혼 여부, 지역, 종교를 포함한다. 두 번째 항목군은 강제적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인 변수로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무조사비율, 가산세율, 세율, 그리고 조세제도의 복잡성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그룹은 자발적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인 조세부담의 적정성, 형평성, 탈세에 대한 태도, 조세제도의 효율성,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조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고액납세자에 대한 인정, 사회규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호감도(예를 들어, 조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발적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해도 및 형평성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연구는 이 변수들과 납세순응도 간의 인과관계를 보고하지만, 설문연구는 단순히 상관관계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설문연구는 실증연구들이 관찰할 수 없는 사회심리학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인구통계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조세분야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자발적 납세순응도가 낮은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조세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조세회피의 기회를 활용할 뿐 아니라, 체감하는 세무조사비율과 가산세율이 오히려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즉, 정책변수를 통해 기대하는 납세순응도보다 더 낮을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부 지출의 적정성은 그 지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회피의 욕구를 억제하여 성실하게 납세하게 하는 유인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 납세순응 의향이 높은 상황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의 설문연구들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의향은 납세에 대한 사회규범의 정도와 의무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Vogel, 1974; Lewis, 1979; Westat Inc., 1980; Grasmick and Scott, 1982; Yankelovich, Skelly, and White, 1984; Harris and Associates, Inc., 1988; 전승훈과 김재진, 2002; 전병목과 박명호, 2007). 즉, 탈세를 부도덕하다고 인식하는 납세

자들은 순응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덕적 호소(moral appeal)에 따라 순응도가 높아지며, 탈세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용인도는 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으로 작용하며, 다른 납세자(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감정이 커질수록 순응도가 낮아지지만 사회의 응집력(social cohesion)이 높을수록 순응도가 높아지고, 탈세는 또한 불신(distrust)과 소외감(alienation)에 대한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금포탈은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도덕적인 호소(appeal)와 납세에 대한 책임의식 등과 같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Vogel(1974)는 납세의식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인 교환모델은 납세 태도는 소득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고소득자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조세에 대해 덜 관용적(less tolerant)이라고 예측한다. 두 번째 모델인 사회중심 모델은 납세에 대한 태도(attitudes to taxation)는 납세자가 부의 재분배에 대해 얼마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느냐의 함수로 나타난다고 예측한다. 스웨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 결과는 교환모델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에 대해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Lewis(1979)는 영국의 남성 납세자 20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징과 조세시스템에 대한 인식·태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50% 이상의 응답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은 반윤리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35% 정도의 응답자는 그러한 조세포탈을 용인하는 답을 하였다. 조세회피에 관하여 고액의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소액의 탈세에 대해

서는 엄격한 처벌에 반대하는 의견이 오히려 더 많았다. 탈세 금액에 따른 의견은 소득, 연령, 그리고 사회계급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들과 젊은층은 소액의 탈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조세부담이 경감하더라도 탈세의 감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은 세금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식하였다. 납세자들은 전반적으로 누진세 제도가 공평하다고 보고하였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이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자는 소득이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Grasmick and Scott(1982)은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이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처벌(legal punishment), 사회적 불명예(social stigma), 그리고 죄의식(guilt feelings)의 억지 효과를 탈세행위와 절도행위의 비교를 통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설문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불명예나 법적 처벌이 주는 억제 효과는 탈세행위와 절도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죄의식의 억제효과는 탈세행위에 대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납세순응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사회 환경에서의 총체적인 납세순응도가 서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Alm, McClelland, and Schulze(1992)의 연구와 대비되게,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Lewis 1982; Groenland and Van Veldhoven 1983; Warneryd and Walerud 1982) 왜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적인 압력하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지를 개인적인 성격변수(personality variables)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성

격변수가 왜 기회나 사회적 환경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더 조세를 포탈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financial strain)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조세포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Warneryd and Walerud, 1982).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족 등이 조세포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는 납세자의 믿음은 자신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혹은 정부서비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든가 혹은 자신이 만약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세금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소득을 축소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제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opportunity)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탈세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IRS의 자료인 TCMP data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고소득계층과 비근로소득의 비중이 큰 계층이 상대적으로 전체 소득에 대한 누락 소득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Clotfelter(1983)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행위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개념적으로는 발각 가능성과 처벌 수위의 함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이론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다. 과거의 실험실중연구는 세무조사비용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조세포탈행위를 막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납세자가 체감하는 처벌위험과 조세포탈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Spicer and Thomas, 1982). 즉, 처벌위험이 조세포탈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성공한 조세포탈 경험이 현재 느끼는 처벌위험을 낮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많은 연구

들은 탈세자들이 상대적으로 탈세가 처벌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덜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체감하는 처벌 수위가 낮을수록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조세포탈은 정직한 납세자의 결의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특정 납세자군에서 더 자주 발생함에 따라 조세제도의 목적인 분배와 형평을 이루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Spicer, 1975). Tittle and Rowe (1973)는 시험의 부정행위가 만연한 대학 강의 상황에 도덕에 호소하는 방식(moral appeal)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직에 대한 학생들의 의무감 고취는 학생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여서 그 결과 만연한 부정행위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부정행위를 하였던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정직했던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할 용기를 불어넣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도덕에 호소하는 방식(moral appeal)은 정직한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부정행위가 너무 만연하여서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암시를 주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주변에 탈세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당사자도 탈세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Weigel, Hessing, and Elffers(1987)는 탈세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의 두 가지 변수군이 각각 유인(instigation)변수와 억제(constraint) 변수로 구성된 사회심리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소득누락, 과다공제, 미공제로 대변되는 탈세행위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적 조건인 환경적 유인변수로서 재무적 유인(세부담)과 사회적 규범유인(개인의 부를 성공과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며, 환경적 억제변수는 기회(직업군), 법적통제(세무감사비용, 가산세), 및 사회적 통제(준거집단: reference group 내의 탈세자 수)를 포함하고 있다.

심리적 조건인 개인적 유인변수로는 개인적 긴장(조세책무이행의 어려움, 개인이 체감하고 있는 조세제도 및 조세당국의 불공평)과 개인 성향(이기적 또는 사회 중심적)이 있으며, 개인적 억제변수는 체감하는 기회, 체감하는 처벌 위험 정도, 그리고 탈세에 대한 반대(탈세의 적절성에 대한 태도나 도덕적 신념)를 포함하고 있다. 저자들은 각 납세자가 이러한 조건 등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 납세자가 탈세를 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 모델에서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의 변수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예측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높을수록 탈세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부담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증폭시켜서, 그러한 불공평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공제를 과다하게 보고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저자들은 또한 어떤 개인들은 자기 위주의 성향(self-serving tendencies)을 보이고 반면 다른 이들은 사회에 대한 의무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사회가 개인의 부를 성공과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개인들은 더 자기 위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준거집단이 가지는 규범의 일관성과 강도에 따라 그 집단의 탈세 만연도를 설명할 수 있겠으며, 개인 성향은 그런 집단 내에서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여 준다. 준거집단은 개인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개인에 대하여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자기 및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셋째, 기회는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기회이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체감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 그러한 탈세 기회의 객관적인 가능성이 가

지는 영향은 억제될 것이다.

넷째, 실제적인 처벌수위의 차이가 다른 국가 간 혹은 직업군의 다른 탈세율을 설명할 수 있다. 각 그룹 내에서는 행동선택은 개인적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섯째, 준거집단 내에 탈세자 비율이 클수록 사회적 비난이 탈세를 억제하는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세에 대한 개인적인 허용도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개인의 탈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체계는 탈세는 사회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과 개인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Porcano(1988)는 조세포탈에 영향을 주는 18개의 변수를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는 조세포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직업, 소득의 종류(탈세기회), 탈세에 대한 태도, 교환 형평성, 조세시스템의 형평성, 위험선호도, 절세 노력, 정직성, 세율, 소득수준,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납세경험 및 과거 탈세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탈세는 가상 상황에서의 탈세 결정과 과거 탈세 경험 유무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는 정직성, 탈세 기회가 탈세행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도 Porcano(1988)와 같이 탈세가 여러 인구통계적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령(Mason and Calvin, 1978; Mason and Lowry, 1981; Vogel, 1974; Song and Yabrough, 1978), 성별(Aitken and Bonneville, 1980),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직업군(Mason, Calvin and Faulkenberry, 1975; Westat Inc., 1980)이 그러한 인구통계적 변수들의 예이다. 소득의 원천이 조세회피행위의 중요한 변수라는 Cowell(1985)의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Dornstein(1976)의 연구는 연

령과 국적과 같이 준법정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탈세의 적발과 처벌을 통한 조세제도의 효율성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Wastat(1980)은 납세순응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탈세에 대한 도덕적 허용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하게, Wentworth and Rickel(1985)는 탈세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교환 형평성, 준법의식, 탈세에 대한 사회적인 허용도 등이 법적 처벌 위협에 더하여서 탈세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Spicer and Lundstedt(1974)도 납세순응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형평성에 대한 인식, 준거집단(reference groups)에 있어서 알려진 탈세자의 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하였다.

Dean, Keenan and Kenney(1980)의 연구는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경제모형의 예측력 한계를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조세부담과 정부지출, 조세형평성, 세무조사비율과 처벌, 탈세 기회, 정직성과 납세의무, 경제적 필요성 혹은 탐욕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해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424명의 스코틀랜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95%가 조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60%가 정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계층 간의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하며, 적은 수준의 탈세는 만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원한다면 어느 정도 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설문자료를 통하여 경제적인 필요성,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에 대한 고려, 조세형평성, 탈세 기회 및 적발 위험도, 도덕성의 순으로 탈세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Mason and Calvin(1978)은 설문조사를 통해 탈세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두려움이 탈세를 억제하는 요인이며, 또한 조세제도의 형평성 및 조세부담이 탈세 결정에 영향

을 준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김동은과 황호찬(2005)은 개인적 성향, 납세 환경, 동료집단에 대한 인식이 납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문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 특성 변수로 연령, 소득 수준, 학력, 종교성과 보수/진보의 성향을, 납세환경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세무당국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동료집단에 대한 인식이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설문자료는 ‘세무당국에 대한 태도’, ‘소득세 제도에 대한 태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은 납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동료집단에 대한 인식, 연령, 종교성, 보수/진보 성향은 납세의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소득세 제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세무당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납세윤리가 강하다는 결과와 함께, 납세윤리가 납세의도에 대한 중대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실 납세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나라 1000대 기업으로 명시된 회사들 가운데 총 90개 회사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lffers, Weigel, and Hessing(1987)은 탈세행위에 대한 측정치로 설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자체 보고자료(self-report)와 세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결과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탈세 측정치에 따라 탈세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르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자체 보고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탈세 만연도 및 탈세에 대한 허용도가 양(+)의 영향을 주었지

만 처벌에 대한 확실성 및 강도,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은 부(-)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자료로 나타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대한 불만, 세법에 대한 이해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탈법행위에 대한 허용도 등이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납세순응행위는 납세의식의 표출인 만큼,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및 그 결정요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도 지대하여서 국내외적으로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세무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제도 자체와 조세정책에 관한 납세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아울러 향후 조세정책의 추진방향 및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연구원의 납세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미국 IRS Oversight Board의 Taxpayer Attitude Survey, 영국 국세청(HMRC)의 Customer Service Survey, 호주의 Community Perception Survey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승훈과 김재진(2002)은 납세의식은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납세에 대한 순응도, 세무보고에 있어서의 정직성, 그리고 납세기여에 대한 인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첫째, 조세의 적정성, 공정성 및 편의성, 둘째, 공공재에 대한 신용, 그리고 셋째, 사회적 투명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understanding)가 낮고,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감이 실제보다 높으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을 당연 혹은 본

받을 만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발적 순응도는 낮고 또한 고액납세자의 납세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낮은 편이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63.5%의 납세자들이 자기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반 정도는 조세부담을 상당히 과중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단순히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도를 측정하였는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았으며 또한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가 납세순응도 및 세무신고시 정직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도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자의 납세순응도가 높았고 또한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35%의 응답자만 기꺼이 세금을 낸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실제 행동과는 달리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계층별로는 미혼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직한 세금보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액납세자를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낮았으며, 이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1) 세부담의 공평성 및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높이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2)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3)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납세의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병목과 박명호(2007)도 설문조사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국내의 전승훈과 김재진(2002)의 연구 및 미국의 2005년 납세자 의식조사연구와의 비교 분석도 아울러 행하였다. 저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납세자 의식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조세에 대한 이해도,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자발적 납세순응도, 세무보고에 있어서의 정직성, 납세기여에 대한 인정 등의 다섯 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납세자의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그 수준은 2002년 연구와 비교하여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무 전문가로부터 세금에 관한 정보나 도움을 얻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체감조세부담률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지만 그 괴리는 점차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세금 납부시 어쩔 수 없거나 빼앗기는 기분으로 내는 비율이 78%로 나타나 2002년 연구의 75%보다 약간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저자들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정직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 비해서 정직하게 신고 납부하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진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납세순응에 대한 태도와 정직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고액 납세자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는 평가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특히 저자들에 의하면, 미국의 연구²⁾와 비교한 결과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정직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성실납세행위에 훨씬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상호간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3자 정보 제공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보고에 대한 용인도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저자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탈세가 더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 간의 납세순응도의 차이는 실험방법론을 채택한 Alm, Sanchez, and Juan(1995)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비용이나 가산세율과 같은 정책변수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취하는 것이 납세순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설문지 설계

납세순응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율, 세무조사비용, 가산세비용, 소득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각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납세 의식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 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 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이것은 조세체계 내부에 작동하는 제도적인 변수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수들은 세무조사비용, 가산세율, 세율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또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것은 조세체계의 외부에

2) IRS Oversight Board, IRS Oversight Board Annual Taxpayer Attitude Survey, 2005. 4.

위치하면서 조세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문화, 교육, 경제상황, 사회계층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들은 서로 밀접한 상승작용을 통하여 조세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요인은 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 및 종류, 직업, 결혼 여부, 지역,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들도 아울러 포함한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조세 부담의 적정성, 공평성,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이 납세의식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 납세의식은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성실납세의향 및 납세순응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는 인구통계 특성 질문항목, 조세이해도/경험 항목, 성실납세의향과 납세순응도를 총괄하는 납세순응도 항목, 조세제도 형평성 및 조세제도의 평가 항목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문지 문항은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여부를 나타내는 납세순응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를 작성하는 데 이용되며, 이어 이러한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지수들이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러한 납세의식 관련 지수들의 도출을 위하여 납세의식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문지의 문항들이 설계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개별지수들에 대한 정의 및 이들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먼저, 조세이해도는 국민이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의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세법에 관한

지식을 묻는 객관적인 조세이해도의 평가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이해도를 포함한 기존의 설문조사들은 주관적인 이해도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문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인 이해도에 관한 문항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율, 주택 양도소득세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세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을 종합하여 조세이해도지수를 측정하였다.

조세형평도는 납세자가 현행 조세제도를 통해 체감하는 세 가지의 형평성을 종합한 개념으로서, 이 세 가지 형평성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소득군의 평균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수평적 형평성, 자신과 다른 소득군의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수직적 형평성, 그리고 자신의 납세수준과 납세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정부로 받는 공공서비스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교환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 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여부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형평성에 관한 항목들은 교환의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형평성의 관점에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항목과 함께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형평성이 성실납세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측정하였다.

성실납세의향지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향과 범죄행위로서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 양자를 합해 개인별 지수를 구한 것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관련한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변수들의 정보를 종합한 지수이다. 이 지수와 연관하여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데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한 질문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선행 연구들에서 납세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된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 다른 납세자들의 정직성에 대한 믿음,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공공재의 존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소득에 합당한 세금 책정이라는 요인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납세자의 의견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납세순응도지수는 가상적인 납세 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와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지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는 가상의 현금 매출에 대한 보고 여부와 대금에 대한 현금 지급시 할인해 주겠다는 판매자의 제의에 대한 동의 여부로 측정하게 되며, 납세순응행위지수는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계상했는지의 여부,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매출을 축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측정하게 된다.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들은 납세의식의 형성뿐 아니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moderate)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설문지는 크게 조세이해도 항목, 납세순응도 항목, 조세형평성에 관한 항목과 함께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게 된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납세자의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주장되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진행된 설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령,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위험선호도, 종교, 소득수준 등과 같은 항목들로 이루어진다. 납세의식을 구성하는 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과 인구통계적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는 본 보고서의 <부록1>에 포함되어 있다.

III.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자는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제II장에서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와 팩스 및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조사된 유효표본은 취업자 2,135명과 실업자 204명 등 총 2,339명이다.

이러한 유효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식은 전국을 16개 시·도별로 층화한 후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무작위로 추출법이다. 이를 위해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분할그룹(segmentation)마다 할당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제 조사된 2,339명의 표본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조사 모집단 분포 및 할당된 표본의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4>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1> 표본구성 요약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2,339	100.0
성별	남성	1,393	59.6
	여성	946	40.4
연령	25~29세	277	11.8
	30~39세	729	31.2
	40~49세	716	30.6
	50~59세	458	19.6
	60~64세	159	6.8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1,381	59.0
	자영업자(사업주 포함)	589	25.2
	무급가족종사자	150	6.4
	미취업자	219	9.4
거주지역	서울	513	21.9
	부산	152	6.5
	대구	119	5.1
	인천	126	5.4
	광주	102	4.4
	대전	80	3.4
	울산	52	2.2
	경기	490	21.0
	강원	75	3.2
	충북	70	3.0
	충남	96	4.1
	전북	104	4.4
	전남	78	3.3
	경북	107	4.6
	경남	129	5.5
	제주	48	2.0

2. 기술통계량 요약

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 변수

본 설문조사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7.2%이고 배우자 없는 경우가 22.8%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 포함)이 50.6%로 가장 많았고, 고졸 34.4%, 중졸 이하 8.2%, 대졸 이상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형별로는 무교가 44.5%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23.3%, 불교 22.0%, 천주교 9.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II-2> 인구통계학적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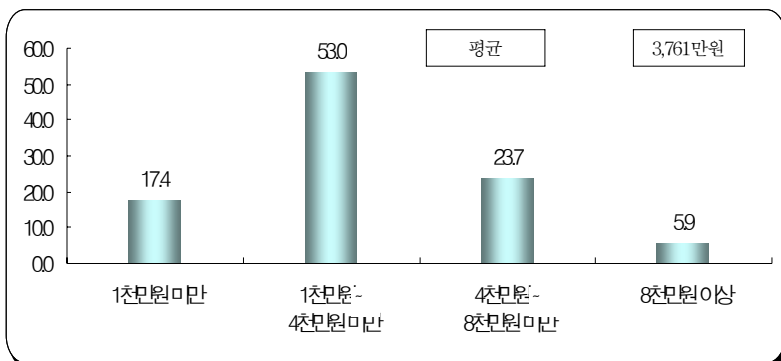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2,339	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07	77.2
	배우자 없음	532	22.8
학력	중졸 이하	191	8.2
	고졸	806	34.4
	대졸	1,183	50.6
	대졸 이상	153	6.5
	무응답	7	0.3
종교	개신교	544	23.3
	천주교	215	9.2
	불교	515	22.0
	기타 종교	24	1.0
	없음	1,041	44.5

한편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수령액 등을 종합한 연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3,76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4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5%이며 이 중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도 3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남성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 약 40%를 차지해 여성의 평균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은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29.7%)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울산지역(7.6%)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형태별 소득수준은 급여생활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 69%로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주/자영업자는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 36.4%, 8천만원 이상이 16.6%로 전체의 53%가 4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사업주/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 연평균 소득수준

(단위: %)



<표 III-3> 연평균 소득수준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 체		2,339	17.4	53.0	23.7	5.9
성별	남 성	1,393	6.6	53.9	31.5	8.0
	여 성	946	33.2	51.7	12.2	2.9
연령	25~29세	277	11.5	82.0	5.6	0.9
	30~39세	729	12.8	58.2	24.9	4.0
	40~49세	716	17.2	44.6	30.6	7.6
	50~59세	458	23.3	41.1	26.1	9.5
	60~64세	159	32.0	50.8	11.4	5.7
학력	고졸 이하	997	26.1	53.5	16.3	4.1
	대졸 이상	1,336	10.9	52.4	29.4	7.3
	무응답	7	0.0	100.0	0.0	0.0
거주지역	서 울	513	13.3	56.3	24.1	6.3
	부 산	152	22.4	54.6	16.5	6.5
	대 구	119	19.5	57.6	16.1	6.8
	인 천	126	15.4	48.3	28.8	7.5
	광 주	102	18.7	46.5	31.7	3.2
	대 전	80	13.7	51.8	26.2	8.3
	울 산	52	7.6	50.6	31.8	9.9
	경 기	490	19.5	51.8	24.1	4.6
	강 원	75	15.9	59.3	19.1	5.7
	충 북	70	12.5	55.9	25.1	6.5
	충 남	96	27.1	52.0	16.3	4.6
	전 북	104	14.1	45.9	29.0	11.0
	전 남	78	29.7	46.6	19.7	4.0
	경 북	107	19.2	48.6	29.5	2.7
	경 남	129	16.7	56.8	21.9	4.6
	제 주	48	11.5	58.2	20.4	9.9
근로 형태	급여생활자	1,381	3.4	69.0	24.6	3.0
	사업주/자영업자	589	6.3	40.8	36.4	16.6
	무급가족종사자	150	83.9	16.1	0.0	0.0
	무직자	219	89.4	10.6	0.0	0.0

나. 납세의식지수 관련 변수³⁾

1) 조세이해도지수 관련 변수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부가가치세 세율 및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인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수이다.

먼저, 조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도는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각종 세금에 대해 34.9%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1.4%)+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33.5%))’고 응답하였고, ‘모르겠다(전혀 모르고 있다(10.0%)+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55.1%))’라고 응답한 자는 6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종 세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성(40.5%)이 여성(29.9%)보다 주관적인 조세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60대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 형태별로는 사업주/자영업자의 세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49.4%), 임금근로자(36.8%)가 그 다음이었고, 무급가족종사자(23.5%)나 무직자그룹(28.3%)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인지도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

3)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3>을 참조하라.

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과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부가가치세율에 관한 질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67.9%)가 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0%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경우 약 46.6%만이 6억원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세금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 정답을 응답한 비율을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계층과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이 대응되는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간 연령대(30, 40, 50대)가 저연령대(20대)와 고연령대(60대)보다 정확하게 인지한 반면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50대 및 60대)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세형평도 관련 변수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와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및 교환의 형평성(exchange equity)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먼저, 현행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응답자의 3.1%만이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6명(63.2%) 정도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5.4%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응답자의 28.3%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유형

별로 살펴보다라도 대부분의 유형에서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약 52%)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 41.3%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연령대의 경우 40대,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환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7명(73.3%)이 낮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성실납세의향 관련 변수

성실납세의향지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관한 질문과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및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로부터 생성되었다.

먼저,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드는 생각의 경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는 응답한 비율은 47.1%이고, 탈세는 범죄행위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낸다고 하여 소극적인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약 4.0% 정도이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응답자는 38.2%,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를 합한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의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의 경우 저연령대(20대)와 고연령대(60대)의 성실납세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실납세의향이 높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다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높았으며,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와 응답자가 부동산 거래를 행한 경우라고 각각 가정한 다음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개별 질문에 응답자들은 유사한 응답 성향을 나타냈다. 두 질문들에 대하여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성실납세의향을 나타냈다(자영업자인 경우 74.9%, 부동산 거래의 경우 75.5%).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질문 모두에 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다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임금근로자보다는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계층보다는 기타 시도에 거주하는 계층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중간소득층(1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보다는 저소득층(1천만원 미만)과 고소득층(8천만원 이상)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4) 납세순응행위 관련 변수

납세순응도지수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실제납세순응행위지수와 가상의 납세 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실제납세순응행위지수는 과거 3년간 소득의 축소신고 경험,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매출 축소 및 비용 과다 신고 경험을 각기 질문하여 생성되었다.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는 두 가지 가상 상황 속에서 응답자들의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으로 생성되었다.

먼저, 실제납세순응행위와 관련하여 소득의 축소신고 경험 여부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9.5명 이상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연령대보다 40대에서, 타 근로 형태보다 사업자/자영업자 직군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험이 없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축소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자는 10명 중 1명 미만(8.2%)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에서는 중간연령대(30대, 40대, 50대)가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사업자/자영업자보다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3년 중 사업자였던 응답자 중 매출 축소 및 비용 과다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자가 14.9%나 되어서, 상대적으로 앞의 두 가지 경험보다 납세순응행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

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에서는 30~40대와 60대층에서, 학력수준에서는 고졸 이하 계층보다 대졸 이상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매출 축소 및 비용 과대계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중간소득계층보다는 저소득층(1천만원 미만)과 고소득층(8천만원 이상)에서 매출 축소 및 비용 과대계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상납세순응행위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응답자들의 납세순응 행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발각될 가능성이 없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59.4%)는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수도권 거주자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타 근로 형태보다도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고하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묻는 것이다.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9.4%)만이 ‘현금거래 유도는 업주가 세금 회피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이 제안에 응하겠다는 응답자는 36.7%, 5% 할인에는 응하지 않지만 10% 할인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응답자가 43.9%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근로 형태보다도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금거래에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납세의식지수

본장에서는 설문지 질문 중 몇 가지 중요 변수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한다. 방법론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한다.

본 방법론은 납세의식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조세이해도, 형평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변수들을 종합해 납세의식지수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기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관련 설문변수들의 정보를 설문조사변수들의 선형결합이라는 형태로 축약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본 기법을 통해 주관적인 조세이해도에 관한 설문조사변수(설문 II-1)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묻는 객관적인 조세이해도에 관한 설문조사변수(설문 II-3) 등의 변수들 속에 있는 공통된 정보를 축약적으로 나타내도록 다음의 식과 같은 선형관계를 통해 개인별 조세이해도 지수를 작성하는 것이다.

$$y_i = \alpha_1 x_{1i} + \alpha_2 x_{2i} \quad (1)$$

식 (1)에서 y_i 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로의 조세이해도지수이고, x_{1i} 는 관측되는 조세이해도의 부분 정보로 주관적인 조세이해도변수이며, x_{2i} 는 객관적인 조세이해도이다. 가중치로 해석되는 계수들은 잠재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y_i 를 x_{1i} 와 x_{2i} 에 회귀분석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x_{1i} 와 x_{2i} 의 최적인 선형정보결합을 나타내는 계수로 구한다. 두 변수들의 정보의 분산 정도를 최대한 포함하여, 잠재변수의 정보 또는 분산 정도를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수리모형을 이용

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성분 분석이란 다차원의 데이터를 정보 손실의 최소화를 전제로 차원 축소를 행하는 방법론으로, 다차원 변수의 변량을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 불리는 적은 수의 변수로 요약하고자 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주성분은 p 개의 원변수로 구성된 벡터 x 의 선형결합이며 주성분 벡터 y 는, $y = ax$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한 선형계수벡터 a 를 찾는 작업이 바로 주성분 분석이다. 예를 들어 두개의 변수를 선형결합해 하나의 변수로 결합하는 선형계수행렬은 선형결합한 변수의 정보량($\text{var}(\underline{a}'x) = \underline{a}'\Sigma a$, Σ 는 x 의 분산공분산행렬)을 극대화하되, 두 벡터의 내적(convex)결합이라는 $\underline{a}'\underline{a} = I$ 의 제약을 만족시키며 도출한다. 여기서 I 는 항등행렬이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ax \underline{a}'\Sigma a \quad \text{s.t.} \quad \underline{a}'\underline{a} = I \quad (2)$$

라그랑지 방식을 이용해 식 (2)의 1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Sigma a - \lambda a = (\Sigma - \lambda I)a = 0 \quad (3)$$

즉, 주어진 x 의 정보(분산공분산행렬)로 위의 특성벡터와 특성치를 구하는 수리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최적인 선형계수행렬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두개의 변수에서 변수의 수를 늘려, 차원을 높여 설명하면, 주성분 분석은 p 개의 변수 $x_1, x_2, \dots, x_p$ 를 정보로 하여 공통 요인을 추출, 이 변수들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지표인 주성분 $y_1, y_2, \dots, y_n$ 를 도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n 은 p 보다 적거나 같다.

$$\begin{aligned} y_1 &= a_{11}x_1 + a_{12}x_2 + \cdots a_{1p}x_p \\ y_2 &= a_{21}x_1 + a_{22}x_2 + \cdots a_{2p}x_p \\ &\vdots \\ y_n &= a_{n1}x_1 + a_{n2}x_2 + \cdots a_{np}x_p \end{aligned} \quad (4)$$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을 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성분은 $\underline{a}_1' \underline{a}_1 = 1$ 을 만족하는 벡터 $\underline{a}_1$ 중 $var(\underline{a}_1'(x - \mu))$ 를 최대화하는 $\underline{a}_1$ 를 찾고, $y_1 = \underline{a}_1'(x - \mu)$ 를 제1주성분이라고 한다. 즉, 변수 계수들의 내적조건은 $(\underline{a}_1' \underline{a}_1 = 1)$ 을 유지하면서 선형결합한 변수들의 분산(정보량)을 극대화한다. 즉, 변수가 두 개인 경우, 두 변수를 벡터로 간주하여 벡터의 선형결합을 시도하되, 그 선형결합된 벡터의 길이(분산도)를 극대화한다.

제2주성분은 $\underline{a}_2' \underline{a}_2 = 1$, $\underline{a}_1' \underline{a}_2 = 0$ 를 만족하는 벡터 $\underline{a}_2$ 중 $var(\underline{a}_2'(x - \mu))$ 를 최대화하는 $\underline{a}_2$ 를 찾고, $y_2 = \underline{a}_2'(x - \mu)$ 를 제2주성분이라고 한다. 즉,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제1성분에서 찾은 선형결합된 벡터에 독립인(직각인) 다른 벡터를 찾는 것이다. 만약, 변수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각각 0과 1 사이 그 측정치들이 분포), 두 변수는 x축과 y축이 되고, 원점과 (1,1)을 연결하는 45도 선분이 위의 제1성분을 구하는 과정의 결과가 될 것이며, 변수의 계수는 (0.5, 0.5)로 두 변수에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그 선형결합된 y_1 의 분산(정보량)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구해진 제1성분의 벡터(45도 선분)에 직각인 제2성분의 길이는 0(분산 또는 정보량으로 해석)이 되고, 두 변수의 정보량은 정보 손실 없이(즉, 제1성분이 2변수의 정보량을 모두 포함) 하나의 변수(선형결합된 제1성분)으로 축약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text{변수 벡터의 } \underline{x} = \begin{pmatrix} x_1 \\ x_2 \\ \vdots \\ x_p \end{pmatrix} \text{ 분산공분산행렬의 } \Sigma = \begin{pmatrix} \sigma_{11} & \sigma_{12} & \cdots & \sigma_{1p} \\ \sigma_{11} & \sigma_{11} & \cdots & \sigma_{2p}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sigma_{p1} & \sigma_{p2} & \cdots & \sigma_{pp} \end{pmatrix} \text{의}$$

고유치($\lambda_1 \geq \lambda_2 \cdots \lambda_p$)에 상응하는 고유벡터($\underline{\nu}_1, \underline{\nu}_2 \cdots \underline{\nu}_p$)가 위의 주성분의 조건을 만족한다. 나아가 주성분 변수 y_j 의 분산은 고유치 λ_j 와 같다는, 즉, 변수 벡터 $\underline{x}$ 들의 변동의 합은 고유치의 합과 동일하다는 다음의 식을 이용해, 계산된 주성분의 고유치의 크기로 축소될 차원의 수를 결정한다.

$$\sum_{i=1}^p \text{var}(x_i) = \text{tr}(PAP') = \text{tr}(\Lambda P'P) = \text{tr}(\Lambda) = \sum_{i=1}^p \lambda_i \quad (5)$$

즉, 주성분 분석은 변수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기초로 하여 자료의 차원을 축소하는 분석방법이며 이는 원변수의 선형결합 형태인 새로운 변수의 생성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주성분 분석의 다른 예로 부, 소득, 특정직업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하나의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수로 묶어 가구원의 건강 등의 특정 연구의 관심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 또는 자산의 크기를 재는 변수를 작성한다고 하자. 자산의 구성요소로 가계설문조사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누고 그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양자의 단순합계로 자산변수를 가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화폐단위로 환산되지 않는 수집된 정보, 예들 들어 가족의 숫자나 집의 보유 여부 등 부분적으로 자산을 표현하나 그 결합된 정보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주성분 분석을 적

용할 수 있다. 각각의 정보를 위의 수리모형에서 설명하듯이 하나의 축으로 간주하여, 예를 들어 두 개의 축(또는 변수)에서의 개별 가계정보의 선형결합에 따른 방향과 크기를 정보로 환산하고, 각각의 가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종합한 추정된 주된 방향에 (즉, 위의 식에서 추정된 계수에) 따라 각각 동일한 단위로 환산된 가계자산의 크기를 도출하는 것이다. 위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가 전체 자산이라는 잠재변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 광의의 자산정보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직관적으로 의미 없는 변수의 기계적인 결합은 그 최종지수의 해석을 무의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성분 분석은 본 보고서와 같이 조세형평도나 조세이해도 등의 세부 변수가 광의의 납세의식에 하나의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실제 납세자 개인들에게서 개별 정보들의 결합이 어떠한 식으로 (선형결합의 경우 각각의 계수 또는 가중치의 설정)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론적이나 선험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등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방법론은 경제학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업의 활동을 하나의 마케팅활동지수라는 축약된 정보로 요약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통계패키지인 Stata의 주성분 분석(pca)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본장에서는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납세순응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를 작성하고, 이어 이들 지수를 총괄한 광의의 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며, 다음 장에서 지수들 간의 관계와 이들 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 특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개별 지수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형성된 변수값 중 최고치를 100점, 최저치를 0점으로 단조변환하여 사용한다. 향후 설문조사에서 유사한 설문조사방식을 사용한 경우 (설문문항의 답변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등의 조정도 포함하여) 위의 방식은 납세의식수준의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데 무난할 것이나, 자료의 분산도(최고치-최저치 등으로 측정가능)나 설문지 답변 원 변수값의 분포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 등 연도별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특수한 경우를 감안하면, 최고치와 최저치를 고려하지 않은 지수값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수의 용이한 해석을 위해 원변수의 최고치를 사용해 100점 만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록의 <부표 18>과 같이 최고치만을 고려한 평균치는 본문에서 제시한 평균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분산도가 아닌 분포 자체의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를 감안해 원변수값의 기술통계량도 부록의 <부표 19>로 제시한다.

먼저, 각 개별지수들의 정의와 기술통계량을 논의한다.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의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지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의 소득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 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여부를 종합한 지수이다. 납세의향지수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자를 합해 개인별 지수를 구한 것에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변수들의 정보를 종합한 지수이다. 납세순응도지수는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와 실제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지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조세이해도지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55.2점을 보이고 있다. 조세형평도는 이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며, 절대적인 수준으로도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형평도에 부정적인 평가 쪽으로 미세하나마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점수로는 46.1점의 평균값을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성실납부의향은 평균은 69.0점으로, 3명중 2명은 성실납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조세 관련 인식이나 의향 변수들에서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변수로 나아가면, 실제 경험을 묻는 납세순응지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득을 과다계상하거나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납세비순응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실납부의향지수에 비해 납세순응행위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성실납부의향은 낮아도 실제 순응행위에서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이유로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다음의 추가적인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지수조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상품구매시 현금 지불을 통한 할인이나, 가상적인 자영업주로서 현금매출액의 신고누락과 같은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지수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지수에 비해 훨씬 작은 32.3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납세순응행위와의 큰 격차는 본 설문지에서의 가상순응행위 질문들이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로서, 즉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소극적인 납세순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상납세 상황에서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사점은 많은 납세의식 설문조사에서 실제 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 가상납세순응행위 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위의 두 행위상 큰 격차는 이런 분석들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4> 조세이해도, 형평도, 납세의향, 순응행위도 지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세이해도지수	0.552	0.328	0	1
조세형평도지수	0.461	0.225	0	1
성실납세의향지수	0.690	0.345	0	1
납세순응행위지수	0.946	0.170	0	1
가상순응행위지수	0.323	0.348	0	1

위의 세부지수를 소득, 교육수준, 자영업자여부 등 중요 인구특성외생변수와 연계하여 각 그룹별 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인구특성변수별 개별지수 기술통계량

	이해도 지수	형평도 지수	납세의향 지수	순응행위 지수	가상순응행위 지수
고소득(4천만원 이상)	0.681	0.431	0.696	0.920	0.365
저학력(4천만원 미만)	0.488	0.475	0.687	0.958	0.302
고학력(대졸 이상)	0.580	0.453	0.674	0.945	0.320
저학력(고졸 이하)	0.514	0.471	0.713	0.948	0.327
자영업자	0.649	0.440	0.751	0.885	0.393
비자영업자	0.502	0.471	0.659	0.978	0.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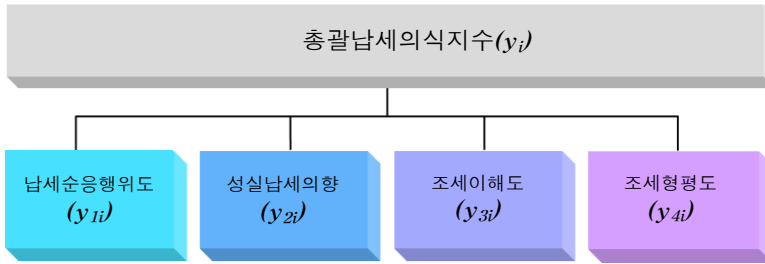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경우 조세이해도가 높고, 성실납부의향이나 가상순응행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실제 납세순응행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나눈 집단은 조세이해도와

성실납세의향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다른 지수들에서는 거의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학력 계층이 형평도에서 근소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이런 경향은 납세의향으로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 조세이해도지수에서는 조세제도 관련 객관적인 질문들⁴⁾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학력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이해도를 보임을 추정할 수 있다. 소득별로 분류된 집단 간에도 조세이해도를 제외하고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자영업자 집단이 고소득 및 고학력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점을 미루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이해도가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세이해도가 실제 순응행위 여부나 성실납세의향으로는 연계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각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수별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해도, 형평도, 의향, 순응행위(여기서는 납세순응행위지수로 실제순응행위지수 사용) 등 4개의 납세의식지수는 개념상 위와 같이 분류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납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광의의 납세의식에서는 분리하여 다루기가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측정 가능한 납세의식 수준이라는 개념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납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으로 유발되는 납세의식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위의 개별지수들을 결합한 하나의 납세의식지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개별지수를 작성하듯이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해 개별지수의 선형결합으로 총괄납세의식을 추정하며, 4개의 지수가 <표 III-6>과 같이 병렬적으로 연계된다.

4) 객관적인 질문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율, 주택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금액에 관한 설문을 의미한다.

<표 III-6> 총괄납세의식지수 결정모형 구조도



총괄납세의식지수의 평균은 78.4점이며, 평균지수의 크기는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구성하는 부분지수로 납세의향지수 평균과 가장 근접하고, 조세형평도지수가 가장 낮은 지수로서 전체 지수를 낮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실제 납세순응행위도 지수는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높이고 있다. 총괄납세의식지수의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위의 지수와 인구 특성별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인구특성변수별 총괄납세의식지수 기술통계량

분류	세분류	총괄납세의식지수
고소득(4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상	0.679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0.744
저소득(4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0.805
	1천만원 미만	0.835
고학력(대졸 이상)	대학원졸 이상	0.756
	대학졸	0.778
저학력(고졸 이하)	고졸	0.785
	중졸 이하	0.850
자영업자	자영업자	0.713
비자영업자	급여생활자	0.816
	무급가족종사자	0.833
	무직자	0.842

소득과 교육변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8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집단과 1천만원 미만의 최저소득집단의 총괄납세의식은 약 15%포인트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응답자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도 총괄납세의식지수는 상당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 졸업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의 차이는 약 10%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군별로는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집단이 큰 격차를 보이고, 비자영업자 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정리하면, 고소득, 고학력,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에 음(-)의 영향을 주며, 이것은 이들 고소득, 고학력, 그리고 자영업자 여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총괄적으로 납세의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다른 외생변수 중에 총괄납세의식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보이는 것은 위험선호도 변수로서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총괄지수는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4. 납세순응행위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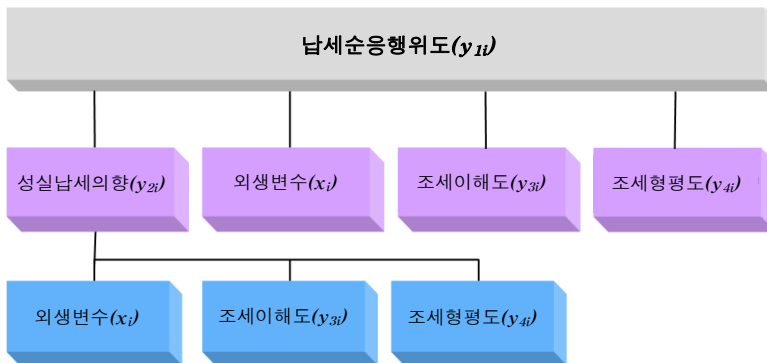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개별지수 및 총괄납세의식지수의 추정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개별지수와의 관계를 보다 입체화시켜 분석함으로써 납세의식의 고취와 현실적으로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의 총괄납세의식지수는 개별 네 개의 지수에 선형결합 이외의 어떤 제약이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납세순응행위 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화시켜 다음의 식과 납세순응

행위 결정모형을 고려한다.

$$y_{1i} = f(y_{2i}(x_1, y_{3i}, y_{4i}), x_i, y_{3i}, y_{4i}) \quad (6)$$

y_{1i} 는 납세순응행위지수로 협의의 납세의식 또는 성실납세의향 변수(y_{2i})와 조세이해도(y_{3i}), 조세형평도(y_{4i}) 및 기타 외부요인 (예: 개인의 인구동학적 요인, 소득, 직업 등 외생변수 x_i)에 의해 결정되며, 성실납세의향지수도 조세이해도, 형평도,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2] 납세행위 결정모형 구조도



위의 모형을 선형회귀분석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표 III-8>과 <표 III-9>에서 보고한다. <표 III-8>의 첫 번째 열은 실제납세순응경험도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열은 가상적인 납세순응경험도의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표 III-8>에서는 추정된 개별지수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세의향도, 이해도, 형평도의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납세순응행위나 가상납세순응행위나 모두 성실납세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우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보다 가상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세의향이 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성실납세의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형평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호는 예상한 것과 같으나, 유의미하지는 않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이해도는 예상과 달리 음(-)의 부호를 보이며, 한계적이거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III-8>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실제납세순응행위	가상납세순응행위
절편	0.9337 (0.0116)***	0.1021 (0.0229)***
개인별 성실납세의향	0.0539 (0.0103)***	0.2924 (0.0201)***
개인별 조세이해도지수	-0.0591 (0.0107)***	0.0329 (0.0210)
개인별 조세형평도지수	0.0179 (0.0157)	-0.0009 (0.0309)
R ² (표본수)	0.0257 (2321)	0.0860 (2319)

주: ***, **, *는 각각 1%, 5%, 그리고 10%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물론 이들 변수들의 영향이 위의 순응행위 결정모형도에서와 같이 외생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아래의 <표 III-9>에서 보여주고 있는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결과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등 외생변수를 통제하고도 성실납세의향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순응행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조세의무를 받아

들이는 것이든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들의 납세의향이라는 점이다. <표 III-8>와 같이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보다 가상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세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상납세행위에서는 적극적인 의향이 중요하나, 실제순응행위에서는 직업환경이나 소득수준 등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이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상납세행위에서는 주관적인 의향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조세이해도의 영향으로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는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것은 객관적인 조세체계의 인지도가 납세순응행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탈루 등에 조세체계의 이해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점으로 형평성에 대한 정책홍보 효과가 납세의식 고취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조세이해도 측면에서는 형평성과 연계되어 혜택수준의 홍보 및 탈루의 처벌 등 비용부분의 인지도의 제고가 단순한 조세체계의 인지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영업자 여부는 다른 외생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상납세순응행위에서의 정(+)의 영향(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을 주고 있지만,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자영업자가 객관적으로 납세비순응행위를 유발시키는 직업환경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가상납세순응행위에 관해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은 실제순응행위에서는 위험선호도(설문조사 중 복권가입 성향으로 간접적으로 측정된 변수)가 별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가상납세행위에서는 위험선호도가 유의하고 예상과 같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어떠하든지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 탈루 등의 편익과 비용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위험선호도라는 선호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자체가 납세행위에서 미미하거나, 또는 본 보고서의 설문지와 같은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보고된 실제납세순응행위 여부에 측정오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해석 등이 가능하다. 가상납세 상황에 서는 행위 여부 보고가 보다 정직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크고,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 선호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9>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외생변수 포함

		실제납세순응행위	가상납세순응행위
절편		1.012 (.0256)***	0.0263 (0.0516)
개인별 성실납세의향		0.0650 (0.0102) ***	0.2740 (0.0203) ***
개인별 조세이해도지수		-0.0314 (0.0112)***	-0.006 (0.0225)
개인별 조세형평도지수		0.0047 (0.0154)	0.0134 (0.0308)
인구 특성 변수	소득	-8.93e-07 (9.72e-07).	1.21e-06 (1.94e-06).
	교육	-0.00057 (0.0046)	0.0066 (0.0094)
	직업	-0.0559 (0.0061)***	0.0539 (0.0123)***
	배우자 유무	0.0008 (0.0095)	-0.0011 (0.0190)
	성별	-0.0053 (0.0079)	0.0341 (0.0159)**
	나이	-0.0004 (0.0004)	0.0015 (0.0008)*
	지역	-0.0003 (0.0007)	0.0003 (0.0014)
	위험선호도	0.0024 (0.0059)	-0.0343 (0.0117)***
R ² (표본수)		0.0746 (2321)	0.1027 (2319)

주: ***, **, *는 각각 1%, 5%, 그리고 10%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부록 1>에 첨부한 설문지 질문 중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론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론은 납세의식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조세이해도, 형평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질문들을 종합해 납세의식지수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① 조세이해도지수, ② 조세형평도지수, ③ 성실납세의향지수, ④ 실제납세순응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실제순응행위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⑤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지수들 간의 관계와 이들 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 특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조세이해도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2점을 보이고 있다. 조세형평도지수는 조세이해도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100점 만점에 46.1점의 평균값을 보였다. 성실납부의향지수는 조세형평도나 조세이해도보다 높은 69.0점의 평균값을 보여, 3명 중 2명 이상은 성실납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을 묻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서는 평균 94.6점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납세비순응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순응행위지수가 성실납부의향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성실납부의향은 낮아도 실제로 납세순응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세원투명성 등의 이유로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대체변수로 상품구매시 현금 지불을 통한 할인이나, 가상적인 자영업주로서 현금매출액의 신고누락과 같은 가상납세 상황에서의 가상순응행위지수도 추정하였다. 동 지수는 실제순응행위지수에 비해 훨씬 낮은 평균 32.6점을 보였다. 실제 납세순응행위와의 큰 격차는 본 설문지에서의 가상납세순응행위 질문들이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적발 가능성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소극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납세 상황 속에서는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사점은 많은 납세의식 설문조사에서 실제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 가상납세순응행위 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발견된 두 행위상 큰 격차는 이러한 분석들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총괄납세의식지수는 개별지수를 작성하듯이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개별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괄납세의식지수의 평균 값은 78.4점이며, 고소득, 고학력,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납세의식의 고취와 납세순응행위도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납세순응행위 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은 순응행위지수들이 성실납세의향변수와 조세이해도, 조세형평도 및 기타 외부요인(예: 개인의 인구동학적 요인, 소득, 직업 등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선형회귀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 등 외생변수를 통제하고도 성실납부의향은 다른 어떤 지수변수보다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조세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든 성실납세의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보다 가상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부의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상순응행위에서는 적극적인 납세의향이 중요하나, 실제순응행위에서는 직업환경이나 소득수준 등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이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세이해도도 실제순응행위에 대하여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객관적인 조세체계의 인지도가 실제납세순응행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세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탈루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실증분석에 의하면 형평성에 대한 정책홍보 효과가 납세의식고취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이해도 측면에서는 형평성과 연계되어 혜택수준의 홍보 및 탈루의 처벌 등 비용부분의 인지도의 제고가 단순한 조세체계의 인지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여부가 가상납세순응행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실제 납세순응행위에서는 다른 외생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자영업자가 객관적으로 납세비순응행위를 유발시키는 직업 환경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납세의식지수의 연도별 흐름을 추적하여 조세 관련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방법론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해 제Ⅲ장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로만 구성된 기본 설문조사체계는 <부록 2>와 같다.

참고문헌

- 김동은 · 황호찬, 「개인성향 및 납세환경에 대한 태도가 납세윤리와 납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4권, 2005, pp. 27~48.
- 전병목 · 박명호,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전승훈 · 김재진,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차길녕 · 도상호, 「평균신고소득률의 제시가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5권, 2006, pp. 51~77.
- 현진권,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3호, 2005, pp. 135~174.
- _____, 「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 - 납세순응행위의 분석과 정책제언」, 『공공경제』, 제6권 제1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 현진권 · 박창균,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구원, 2001.
- Adams, J.,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tag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1965, pp. 267~299.
- Allingham, M.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p. 323.
- Alm, J., "A Perspective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 Taxpayer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66, No. 3, July, 1991, pp. 577~593.
- _____, “Uncertain Tax Policies, Individual Behavior, and Welfa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No. 1, March, 1988, pp. 237~245.
- _____, R. Bahl and M. Murray, “Audit Selection and Income Tax Underreporting in the Tax Compliance Gam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2, 1993, pp. 1~33.
- _____, B. Jackson and M. McKee,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45, No. 1, 1992a, pp. 107~114.
- _____, _____ and _____, “Institutional Uncertainty and Taxpayer Compli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No. 4, 1992b, pp. 1018~1026.
- _____, G. McClelland and W. Schulze,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8, 1992, pp. 21~38.
- _____, I. Sanchez and A. Juan,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in Tax Compliance,” *Kyklos*, Vol. 48, 1995, pp. 3~18.
- Beck, P., J. Davis and W. Jung, “Experimental Evidence on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Vol. 66, No. 3, July, 1991, pp. 535~558.
- _____ and W. Jung, “Taxpayer Compliance Under

- Uncertaint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Vol. 8, No. 1, Spring, 1989, pp. 1~27.
- Christiansen, V.,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1980, pp. 389~393.
- Clotfelter, C., “Tax Evasion and Tax Rates: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1983, pp. 363~373.
- Collins, J. and D. Plumlee,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 The Effect of Audit Schemes,” *The Accounting Review*, Vol. 66, No. 3, 1991, pp. 559~576.
- Cowell, F., *Cheating the Government*,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0.
- _____, “The Economic Analysis of Tax Evasion”,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1985, p. 163.
- _____ and J. Gordon, “Unwillingness to Pa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6, No. 3, August, 1988, pp. 305~321.
- Cuccia, “The Economics of Tax Compliance: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Go?,”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94, pp. 81~116.
- Davis, J. and C. Swenson, “The Role of Experimental Economics in Tax Policy Resear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8, pp. 40~59.
- Dean, P., K. Keenan, and F. Kenney, “Taxpayers’ Attitudes to Income Tax Evasion: An Empirical Study,” *British Tax Review*, Vol. 1, 1980, pp. 28~44.
- Dornstein, M., “Compliance with Legal and Bureaucratic

- Rules: The Case of Self-employed Taxpayers in Israel,” *Human Relations*, Vol. 29, 1976, pp. 1019~1034.
- Durbin J. and L. Wilde,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Vol. 41, 1988, pp. 61~74.
- Elffers, H., R. Weigel, and D. Hess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Strategies for Measuring Tax Evasion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8, 1987, pp. 311~337.
- Falkinger, J., “Tax Evasion and Equity: A Theoretical Analysis,” *Public Finance*, Vol. 43, No. 3, 1988, pp. 388~395.
- Fischer, C., M. Wartick and M. Mark,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Vol. 11, 1992, pp. 1~46.
- Frey, B. S. and L. P. Feld, “Deterrence and Morale in Taxation: An Empirical Analysi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CESifo Working Paper No. 760, 2002.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1978, pp. 107.
- Gottlieb, D., “Tax Evasion and the Prisoner’s Dilemma,” *Mathematical Social Sciences*, Vol. 10, No. 1, August, 1985, pp. 81~89.
- Graetz, M., J. Reinganum and L. Wilde, “The Tax Compliance Game: Toward an Interactive Theory of

- Law Enforce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2, No. 1, Spring, 1986, pp. 1~32.
- Grasmick, H. and W. Scott,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 1982, pp. 213~230.
- Groenland, E. and G. van Veldhoven, "Tax Evasion Behavior: A Psychological Framewor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3, 1983, pp. 129~144.
- Harris and Associates, Inc., *1987 Taxpayer Opinion Survey, Internal Revenue Services*, New York, NY, 1988.
- Jackson, B. and V.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Vol. 5, 1986, pp. 125~165.
- Kim C., "Does Fairness Matter in Tax Report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3, 2002, pp. 771~785.
- _____, J. H. Evans, and D. Moser, "Economic and Equity Effects on Reporting Decision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Vol. 30, 2005, pp. 609~625.
- Kolm S.-Ch., "A Note on Optimum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No. 3, 1973, pp. 265~270.
- Lewis, A., *The Psychology of Taxation*, St. Martin's Press, 1982.
- _____,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34, 1979, pp. 245~257.
- Moser, D., J. H. Evans and C. Kim, "The Effects of

-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Vol. 70, No. 4, 1995, pp. 619~634.
- Mason, R., Lyle D. Calvin, “A Study of Admitted Income Tax Evasion,” *Law and Society Review*, Vol. 13, 1978, pp. 73~89.
- _____, _____ and G. Faulkenberry, *Knowledge, Evasion and Public Support for Oregon’s Tax System*, Survey Research Center, Oregon State University, 1975.
- _____ and Lowry, *An Estimate of Income Tax Evasion in Oregon*, Survey Research Center, Oregon State University, 1981.
- Pencavel, J.,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Labor Supply, and Nonlinear Tax Schedu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2, No. 1, August, 1979, pp. 115~124.
- Porcano, T., “Correlate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9, 1988, pp. 47~67.
- Porterba, J., “Tax Evasion and Capital Gains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1987, pp. 234~239.
- Reckers, P. M., D. L. Sanders and S. J. Roark, “The Influence of Ethical Attitudes on Taxpayers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4, 1994, pp. 825~836.
- Schwartz, R. and S. Orleans, “On Legal Sancti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34, 1967, pp. 282~300.
- Slemrod, J., “An Empirical Testfor Tax Evas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5, pp. 232~238.

- Song, Y. and T.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s'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8, 1978, pp. 442~452.
- Spicer, M., "New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Tax Evasion," *British Tax Review*, 1975, pp. 152~154.
- _____, "Civilization at a Discount: 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Vol. 39, No. 1, 1986, pp. 13~20.
- _____ and J. Thomas, "Audit Probabilities and the Tax Evasion Deci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982, pp. 241~245.
- _____ and L.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 33, No. 2, 1980, pp. 171~175.
- _____ and S.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 31, 1976, pp. 295~305.
- Srinivasan, T., "Tax Evasion: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1973, pp. 339~346.
- Tittle, C., A. Rowe and Moral Appeal, "Sanction Threat, and Deviance: An Experimental Test," *Social Problems*, Vol. 20, 1973, pp. 488~498.
-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 1974, pp. 499~513.
- Vyas, S. and L. Kumaranayake, "Constructing socio-economic status indices: how to us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Health Policy and Planning*, Vol. 21, No. 6

- pp. 459~468.
- Wärneryd, K. and B. Walerud, "Taxes and Economic Behavior: Some Interview Data on Tax Evasion in Swede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 1982, pp. 187~211.
- Weigel, R., D. Hessing and H. Elffers, "Tax Evasion Research: A Critical Appraisal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8, 1987, pp. 215~235.
- Wenzel, M.,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5, 2004, pp. 213~228.
- Westat Inc., *Individual Income Tax Compliance Factors Study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Internal Revenue Services, 1980.
- Witte, A. and D Woodbury, "The Effects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38, 1985, pp. 1~14.
- Yankelovich, Skelly and White, Inc., *Taxpayer Attitudes Survey: Final Report, Public Opinion Survey Prepared for the Public Affairs Division, Internal Revenue Service*, New York, NY, 1984.
- Yitzhaki, S., "Income Tax Evasion: A No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 201~202.

부 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5월

주관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조사기관 : (주)코리아테이타네트워크

담당연구원 :

응답자 성명	응답자전화번호	조사원 성명

설문조사 응답 대상이 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1.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25세~만 64세까지 진행

Part I. 인구통계특성 질문 1

I-1. 응답자 거주지역(조사원이 할당표를 보고 체크)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I-2. 응답자의 성별(조사원이 체크) : 1. 남자 2. 여자

Part II. 조세 이해도/경험

II-1. ○○님은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II-2.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몇 %입니까?

1. 5% 2. 10% 3. 15% 4. 20% 5. 모른다

II-3. 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계시다면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1. 4억 2. 6억 3. 8억 4. 10억 5. 모른다

II-4. 2008년도에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거래의 최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1. 금액에 상관없음 2. _____원 3. 모르겠다

Part III. 납세순응도

III-1. ○○님은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
2. 들킬 가능성은 낮지만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3.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4.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III-2. ○○님이 만약 자영업자라면 각종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III-2-1. ○○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 III-2 와 III-2-1에서 모두 “예” 인 경우 III-3으로 가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는 III-4로 가시오.

III-3. ○○님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영향력이 큼, 다소 영향력 있음, 거의 영향력이 없음, 전혀 영향력 없음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영향력 큼	다소 영향력 있음	거의 영향력 없음	전혀 영향력 없음
1)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	1	2	3	4
2)	우리의 이웃들은 정직하게 신고, 납부한다는 믿음	1	2	3	4
3)	세무조사 또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	1	2	3	4
4)	납부한 세금에 합당한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	1	2	3	4
5)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각종 혜택	1	2	3	4
6)	소득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금책정	1	2	3	4

 III-5로 가시오.

III-4. ○○님이 정직하게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싶은 이유들 중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매우 영향력 큼	다소 영향력 있음	거의 영향력 없음	전혀 영향력 없음
1)	납세자들이 부정직하기 때문이다.	1	2	3	4
2)	불성실 납세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과도한 세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1	2	3	4
3)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1	2	3	4
4)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각종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1	2	3	4
6)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1	2	3	4

III-5. ○○님은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납세자들의 성실납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영향력이 큼, 다소 영향력 있음, 거의 영향력이 없음, 전혀 영향력 없음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영향력 큼	다소 영향력 있음	거의 영향력 없음	전혀 영향력 없음
1)	세부담을 줄여준다	1	2	3	4
2)	탈세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인다.	1	2	3	4
3)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높인다	1	2	3	4
4)	탈세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1	2	3	4
5)	세부담을 공평하게 한다	1	2	3	4
6)	납세절차를 간소하게 한다.	1	2	3	4
7)	국세청이 더 많은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	2	3	4
8)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1	2	3	4
9)	성실납세자에게 구체적인 우대조치를 제공한다	1	2	3	4
10)	탈세자의 수가 줄었다	1	2	3	4

III-6.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다음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계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1. 경험 없음

2. 경험 있음

2)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축소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0. 부동산 거래 없음

1.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없음

2.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있음

3) 매출을 축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0. 사업자가 아님

1. 매출축소 또는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없음

2. 경험 있음

III-7.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통한 매출액이었고, 나머지 1천만원은 현금 매출액이었습니다. 현금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 제3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발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신고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III-8. 30만원의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 합니다. 만약 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5%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5%의 할인을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2. 5% 할인 정보면 카드결제를 하지만 10%를 할인하여 주면 현금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3. 현금거래 유도는 업주가 세금회피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

Part IV. 조세제도 형평성 및 조세제도의 평가

IV-1. ○○님은 현행 조세제도(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다
2.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3.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4.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5. 잘 모르겠다

IV-2. ○○님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적당한 수준이다
4.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IV-3. ○○님은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적당한 수준이다.
4.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IV-4. ○○님은 아래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함, 동의함, 반대함, 절대적으로 반대함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동의함	동의함	반대함	절대적으로 반대함
1)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사업 주가 주위에 많다	1	2	3	4
2)	세무조사가 공평하지 못하다	1	2	3	4
3)	애매한 세법조항이 많다	1	2	3	4

Part I: 인구통계특성 질문 2

I-3.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I-4. ○○님은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I-5. ○○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급여생활자 2. 사업주/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4. 무직자

I-6. ○○님은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2. 가끔씩 구입하고 있다.
3. 전혀 구입한 적이 없다

I-7. ○○님의 종교는?

1. 개신교 2. 천주교 3. 불교 4. 기타 종교 5. 없음

I-8. ○○님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얼마입니까?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 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연간소득(연봉)_____만원

* I-8 의 경우 응답자가 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심쩍게 응답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4. 8천만원 이상

2. 수정 설문지⁵⁾

sq1.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25세~만 64세까지 진행

Part I. 인구통계특성 질문 1

q-11. 응답자 거주지역(조사원이 할당표를 보고 체크)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 16. 제주 | | | | |

q-12. 응답자의 성별(조사원이 체크) : 1. 남자 2. 여자

Part II. 조세 이해도/경험

q-21. ○○님은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 3.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 4. 전혀 모르고 있다 |

q-22.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몇 %입니까?

- | | | | | |
|-------|--------|--------|--------|--------|
| 1. 5% | 2. 10% | 3. 15% | 4. 20% | 5. 모른다 |
|-------|--------|--------|--------|--------|

5) 설문번호는 부록 5에서 제시된 실증분석용 Stata 프로그램의 변수명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q-23. 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
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1. 4억 2. 6억 3. 9억 4. 10억 5. 모른다

q-24a. 2008년도에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거래의 최저 금액
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1. 금액에 상관없음 2. _____ 원 3. 모르겠다

Part III. 납세순응도

q-31. ○○님은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
2. 들킬 가능성은 낮지만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3.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4.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q-32. ○○님이 만약 자영업자라면 각종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321) ○○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36.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다음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q-361)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계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1. 경험 없음 2. 경험 있음

q-362)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축소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0. 부동산 거래 없음
- 1.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없음
- 2.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있음

q-363) 매출을 축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 0. 사업자가 아님
- 1. 매출축소 또는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없음
- 2. 경험 있음

q-37.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통한 매출액이었고, 나머지 1천만원은 현금 매출액이었습니다. 현금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 제3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발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q-38. 30만원의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 합니다. 만약 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5%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5%의 할인을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 2. 5% 할인 정보면 카드결제를 하지만 10%를 할인하여 주면 현금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 3. 현금거래 유도는 업주가 세금회피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

Part IV. 조세제도 형평성 및 조세제도의 평가

q-41. ○○님은 현행 조세제도(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다
2.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3.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4.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다
5. 잘 모르겠다

q-42. ○○님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적당한 수준이다
4.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q-43. ○○님은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적당한 수준이다.
4.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Part I: 인구통계특성 질문 2

i3.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i4. ○○님은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i5. ○○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
|------------|-------------|
| 1. 급여생활자 | 2. 사업주/자영업자 |
| 3. 무급가족종사자 | 4. 무직자 |

i6. ○○님은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1.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 2. 가끔씩 구입하고 있다. |
| 3. 전혀 구입한 적이 없다 | |

i8. ○○님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얼마입니까?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연간소득(연봉)_____만원

i9. i8의 응답자가 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심쩍게 응답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

- | | |
|--------------------|--------------------|
| 1. 1천만원 미만 | 2.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 3.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4. 8천만원 이상 |

3.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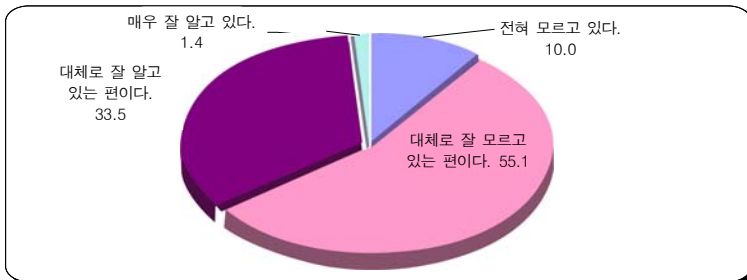
가. 조세 이해도/경험

1) 조세 이해도

- 조세 이해도는 주관적인 이해도와 객관적인 이해도를 모두 질문하였는데, 주관적인 이해도는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였고, 객관적인 이해도에 대한 설문은 부가가치세율, 주택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금액에 대해 직접 질문함.
- 각종 세금에 대해 34.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대체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6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 고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부도 1] 조세 이해도

(단위: %)



- 근로 형태별로는 사업주/자영업자의 세금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나 무직자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세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23.5%).
- 세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적당하거나 낮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소득수준별로는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다른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부표 1> 조세 이해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 체		2,339	34.9	65.1
성별	남 성	1,110	40.5	59.5
	여 성	1,229	29.9	70.1
연령	25~29세	292	23.9	76.1
	30~39세	686	34.0	66.0
	40~49세	643	38.7	61.3
	50~59세	494	42.0	58.0
	60~64세	224	25.7	74.3
지역	수도권	1,114	37.3	62.7
	기타 광역시	529	29.5	70.5
	기타 시도	696	35.3	64.4
학력	고졸 이하	1,101	32.0	68.0
	대졸 이상	1,234	37.6	62.4
	무응답	4	42.5	57.5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36.8	63.2
	사업주/자영업자	390	49.4	50.6
	무급가족종사자	98	23.5	76.5
	무직자	939	28.3	71.7
세부담 수준	높음	966	37.6	62.4
	적당	1,189	33.9	66.1
	낮음	157	22.3	77.7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27.3	72.7
	1천만원~4천만원 미만	904	35.7	64.3
	4천만원~8천만원 미만	366	47.0	53.0
	8천만원 이상	92	60.6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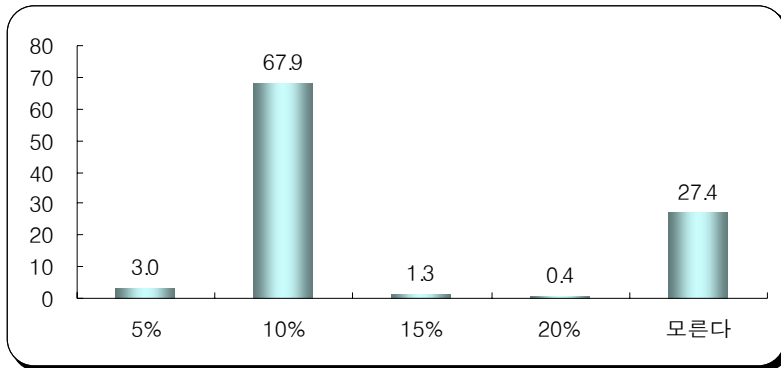
2)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가) 부가가치세율

- 국민 10명 중 약 6명 이상만이 부가가치세율이 '10%'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도 2]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성별로는 여성(33.4%), 연령별로는 20대(41.6%)와 60대(40.5%),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34.4%), 소득수준별로는 1천만원 미만 저소득층(35.6%)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가 부가세가 10%라고 올바르게 인지하는 비율이 72.6%로 가장 높으며 기타 광역시와 기타 시도지역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63.7%로 나타남.

- 세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부가세에 대한 정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2>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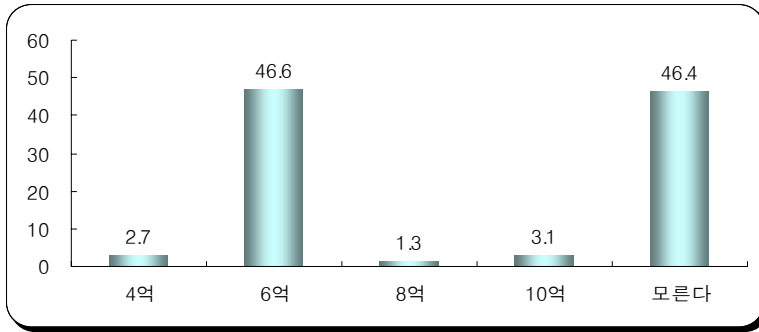
구 분		응답 자수	5%	10%	15%	20%	모름
전 체		2,339	3.0	67.9	1.3	0.4	27.4
성별	남 성	1,110	3.5	74.2	1.1	0.5	20.7
	여 성	1,229	2.6	62.3	1.5	0.2	33.4
연령	25~29세	292	8.2	48.8	0.9	0.5	41.6
	30~39세	686	0.9	75.0	1.0	0.4	22.7
	40~49세	643	3.4	73.5	1.7	0.3	21.1
	50~59세	494	2.4	67.9	1.8	0.2	27.7
	60~64세	224	3.1	55.6	0.3	0.5	40.5
지역	수도권	1,114	2.7	72.6	0.6	0.4	23.8
	기타 광역시	529	4.4	63.7	3.5	0.1	28.3
	기타 시도	696	2.6	63.7	0.7	0.5	32.4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3.4	71.3	0.9	0.7	23.7
	사업주/자영업자	390	2.6	84.5	0.2	0.5	12.2
	무급가족종사자	98	0.0	56.9	1.1	0.0	42.0
	무직자	939	3.2	59.0	2.1	0.0	35.7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3.6	58.7	2.1	0.0	35.6
	1천만원~4천만원 미만	904	3.0	68.8	0.8	0.6	26.7
	4천만원~8천만원 미만	366	2.1	84.9	0.5	0.4	12.0
	8천만원 이상	92	1.2	90.3	0.0	1.2	7.3
학력	고졸 이하	1,101	3.7	59.9	1.6	0.4	34.4
	대졸 이상	1,234	2.5	75.1	1.0	0.3	21.1
	무응답	4	0.0	70.0	0.0	0.0	30.0
세부담 수준	높음	966	2.5	73.9	1.9	0.2	21.5
	적당	1,189	3.2	64.0	1.0	0.4	31.3
	낮음	157	5.1	59.8	0.0	0.6	34.5

나) 고가주택 기준금액

- 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으로 응답한 경우가 46.6%로 응답자의 절반 이하만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도 3] 고가주택 기준금액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모른다는 응답자는 부가가치세율을 모른다는 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보임.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가주택 기준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높은 61.8%이고 20대가 가장 낮은 24.6%로 50대의 정인지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약 40% 정도만이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3> 고가주택 기준금액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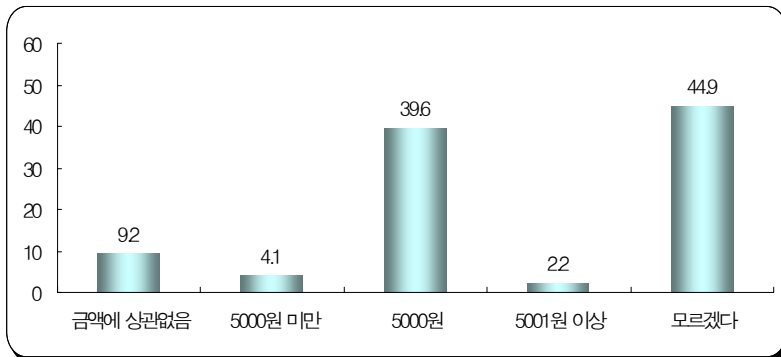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4억	6억	8억	10억	모름
전 체		2,339	2.7	46.6	1.3	3.1	46.4
성별	남 성	1,110	3.5	49.0	1.4	3.2	42.8
	여 성	1,229	1.9	44.5	1.1	2.9	49.6
연령	25~29세	292	2.0	24.6	0.7	5.4	67.3
	30~39세	686	2.8	44.8	1.3	4.1	46.9
	40~49세	643	3.4	46.5	1.1	2.8	46.2
	50~59세	494	1.9	61.8	1.1	0.8	34.5
	60~64세	224	2.7	48.1	2.7	2.6	44.0
지역	수도권	1,114	2.5	58.1	1.2	2.5	35.7
	기타 광역시	529	2.0	39.1	1.8	3.3	53.8
	기타 시도	696	3.4	34.1	0.9	3.8	57.8
학력	고졸 이하	1,101	3.4	42.0	1.6	2.5	50.5
	대졸 이상	1,234	2.0	50.7	0.9	3.6	42.7
	무응답	4	0.0	67.9	0.0	0.0	32.1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2.8	45.5	1.6	2.6	47.6
	사업주/자영업자	390	1.9	54.0	2.1	2.5	39.6
	무급가족종사자	98	5.3	38.6	1.2	4.3	50.5
	무직자	939	2.6	45.5	0.6	3.6	47.6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3.1	42.3	0.8	3.9	49.9
	1천만원~4천만원	904	2.6	43.6	1.2	2.5	50.1
	4천만원~8천만원	366	2.5	61.0	2.2	2.5	31.8
	8천만원 이상	92	0.0	65.9	3.0	1.4	29.7
세부담 수준	높음	966	2.3	52.2	1.3	4.2	40.0
	적당	1,189	3.0	42.0	1.4	2.5	51.2
	낮음	157	2.9	43.4	0.9	0.7	52.1

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최저 금액에 대한 인지도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44.9%로 가장 많음. 그리고 과거 기준이었던 5,000원이 최저금액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6%로 나타나 2008년 7월 이후 변경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비율은 9.2%에 불과함
- 성별로는 남성(49.8%)이 여성(40.4%)보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 형태별로는 사업주/자영업자(49.0%)와 무직자(48.5%) 그룹이 타그룹에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도 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최저 금액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부표 4>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최저 금액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금액 관계 없음	5천원 미만	5천원	5천원 이상	모름
전 체		2,339	9.2	4.1	39.6	2.2	44.9
성별	남 성	1,110	8.2	4.7	35.2	2.1	49.8
	여 성	1,229	10.1	3.6	43.5	2.3	40.4
연령	25~29세	292	10.4	4.9	41.8	0.7	42.1
	30~39세	686	9.2	5.5	49.9	3.1	32.3
	40~49세	643	8.9	4.1	39.9	2.6	44.5
	50~59세	494	10.2	2.7	28.8	2.0	56.3
	60~64세	224	6.5	1.9	28.0	0.7	63.0
지역	수도권	1,114	10.4	4.6	40.1	1.9	42.9
	기타 광역시	529	7.8	3.1	42.2	2.0	44.9
	기타 시도	696	8.4	4.1	36.7	2.8	48.9
학력	고졸 이하	1,101	7.5	2.7	34.5	1.4	53.8
	대졸 이상	1,234	10.7	5.4	44.1	2.9	36.9
	무응답	4	16.4	0.0	45.8	0.0	37.8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8.0	5.9	44.6	1.9	39.6
	사업주/자영업자	390	10.6	5.4	31.0	4.0	49.0
	무급가족종사자	98	15.5	6.8	34.3	1.1	42.3
	무직자	939	9.2	1.6	38.8	1.9	48.5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8.5	2.1	40.5	1.6	47.4
	1천만원~4천만원 미만	904	8.7	5.6	38.5	2.6	44.6
	4천만원~8천만원 미만	366	11.8	6.5	40.8	2.0	38.9
	8천만원 이상	92	11.6	2.3	36.5	5.6	44.0
세부담 수준	높음	966	9.6	4.5	45.0	2.4	43.8
	적당	1,189	9.0	4.3	36.5	2.1	46.4
	낮음	157	9.3	1.6	29.9	1.7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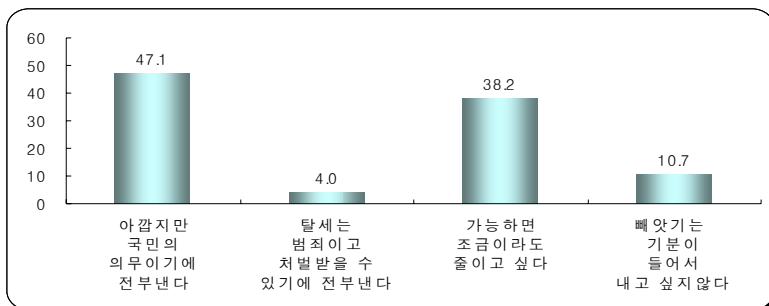
나. 납세 순응도

1)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 각종 세금 납부 시 응답자의 47.1%가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납부한다고 응답함. 이외에도 4%의 사람들은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의 사람들이 전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38.2%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1명꼴로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함.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세금을 자발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응답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5%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도 5]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

(단위: %)



<부표 5>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	들킬 가능성은 낮지만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전 체		2,339	47.1	4.0	38.2	10.7
성 별	남 성	1,110	45.4	3.1	38.3	13.2
	여 성	1,229	48.7	4.7	38.2	8.4
연 령	25~29세	292	51.7	3.6	32.5	12.1
	30~39세	686	37.9	4.3	45.1	12.7
	40~49세	643	46.7	4.3	37.9	11.1
	50~59세	494	47.8	4.7	38.6	9.0
	60~64세	224	69.4	0.9	24.9	4.8
학 력	고졸 이하	1,101	48.8	3.3	36.9	11.1
	대졸 이상	1,234	45.6	4.5	39.5	10.4
	무응답	4	57.5	16.4	26.1	0.0
지 역	수도권	1,114	48.0	3.7	37.4	11.0
	기타 광역시	529	47.6	4.7	37.5	10.2
	기타 시도	696	45.5	3.8	40.2	10.5
세 부 납 수 준	높음	966	42.7	3.3	38.9	15.1
	적당	1,189	51.2	3.8	37.6	7.4
	낮음	157	43.6	9.0	38.2	9.2
복 권 구 입 행 태	정기적으로 구입	113	27.0	5.1	52.1	15.7
	가끔 구입	937	46.1	4.0	37.1	12.8
	구입 경험 없음	1,289	49.7	3.8	37.9	8.7

-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및 기타 광역시 지역이 기꺼이 또는 마지못해서라도 전부 낸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줄이고 싶다는 의견은 기타 시도 지역(40.2%)에서 약간 높게 나타남.
- 세부담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51.2%가 기꺼이 세금을 전부 낸다고 응답하여 세부담이 높거나 낮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세부담이 낮은 응답자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낸다는 응답이 약 6%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고, 세부담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15.1%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 7~8%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성실납부 의향

- 앞서 납세준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납세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는데, 가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두 가지 상황에서 질문을 시도함. 그 첫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성실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은데 본인이 만약 자영업자라면 성실신고를 할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둘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다운계약서’ 등이 매매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있어서 부동산 거래시 각종 세금을 성실납세하는지를 질문함.

시나리오 (1) :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각종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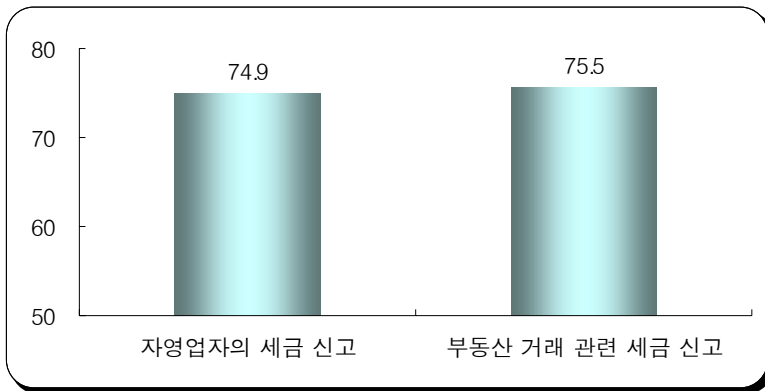
시나리오 (2) :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신고

-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련 세금(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응답자 10명 중 7명(74.9%)은 각종 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부도 6]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 의향

(단위: %)



<부표 6>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 의향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자영업자의 세금신고 (시나리오 1)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신고 (시나리오 2)
전 체		2,339	74.9	75.5
성별	남 성	1,110	74.2	73.4
	여 성	1,229	75.6	77.4
연령	25~29세	292	82.9	80.3
	30~39세	686	69.5	75.3
	40~49세	643	71.3	71.9
	50~59세	494	78.1	74.0
	60~64세	224	84.7	83.4
학력	고졸 이하	1,101	77.2	76.5
	대졸 이상	1,234	72.9	74.5
	무응답	4	86.3	86.3
지역	수도권	1,114	72.1	74.2
	기타 광역시	529	74.0	73.7
	기타 시도	696	80.2	78.9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66.2	71.6
	사업주/자영업자	390	83.1	80.4
	무급가족종사자	98	79.1	73.4
	무직자	939	79.6	77.4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976	79.0	76.7
	1천만~4천만원	904	72.7	74.5
	4천만~8천만원	366	68.8	73.8
	8천만원 이상	92	78.7	78.9
세부담 수준	높음	966	68.1	69.2
	적당	1,189	78.8	79.6
	낮음	157	85.1	80.9
납세 태도	전부 낸다	1,195	84.1	84.3
	줄이고 싶다	894	69.3	69.5
	내고 싶지 않다	250	51.0	54.5

- 그러나 응답자 특성별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음.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기가 자영업자라면, 각종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66.2%)이 실제 사업주/자영업주(83.1%)보다 약 17%포인트 이상 낮아 현재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 (1)에 대해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인 대졸 이상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성실납세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에 대해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30대층에서 자영업자라면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겠다는 의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임금근로자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성실납세 의향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본인들이 세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실납세 의향률이 10%포인트 낮게 나타남.
- 세금을 전부 내겠다는 응답자의 84.3%가 성실납세를 하겠다고 한 반면,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의 54.5%만이 성실납세를 하겠다고 하여 납세 태도별로 답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2)의 경우 특히 40대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실납세 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성실납세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주/자영업자가 부동산 매매시 관련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80.4%)이 다른 그룹보다 더 높음.

- 세부담 수준별, 납세도별 특징은 시나리오 (1)과 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음.

시나리오 (3)

- 홍길동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천만원이었습니다.
- 이 가운데 7천만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통한 매출액이었고,
- 나머지 1천만원은 현금 매출액이었습니다.
- 현금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 제3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발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시나리오 (3)은 보다 더 현실적인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평가를 시도함.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는 그동안 응답자들이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보다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원칙대로 답변하기 쉬운 것이라는 판단하에 보다 실제 상황에 가깝게 단계별로 상황을 제시하여 평가함.
- 시나리오 (4)의 경우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평가문항으로 제시한 것임.

시나리오 (4)

- 30만원의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 합니다. 만약 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5%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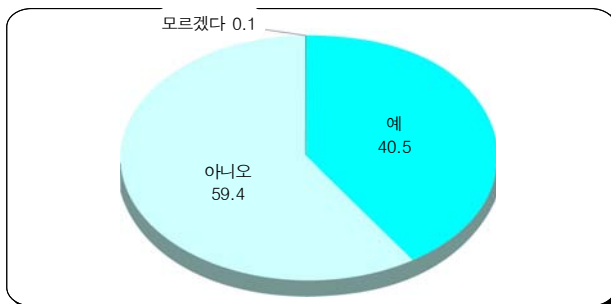
- 시나리오 (3)의 경우 국세청에 제3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발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운데, 작

년 매출액 중 1천만원이 현금 매출액에 대해 신고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해(59.4%), 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신고시 축소가 예상됨.

- 시나리오 (1)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성실납세 의향률이 약 35%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제시했을 경우에, 특히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거래 또는 매매자간 협상이 가능한 거래,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에서는 실질적인 성실납세 의향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 연령층이 성실납세 의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층이 가장 높은 51.0%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성실납세 의향이 남자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매출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부도 7]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 매출 1천만원에 대한
성실 납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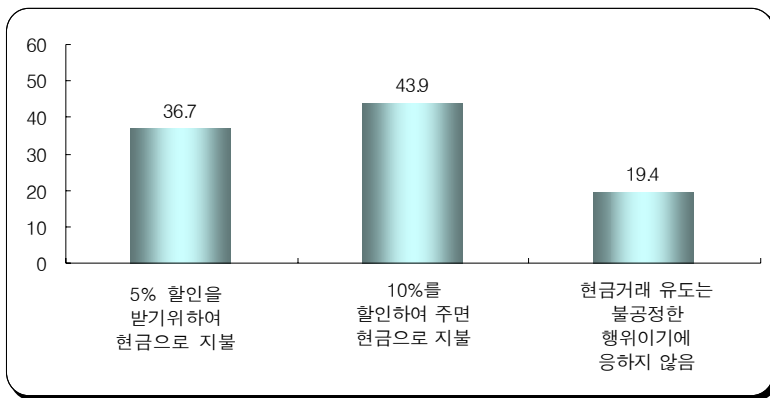
(단위: %)



- 30만원의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 시 만약 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5%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5% 정도만 할인하더라도 현금 지불을 하겠다는 비율은 36.7%(응답자 10명중 3명 이상), 10%를 할인해준다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43.9%의 응답자가 현금 지불을 하겠다고 응답함. 즉, 업주가 5%만 할인을 제시하더라도 응답자의 약 80%는 현금 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주와 소비자간에 협상 수준이 이 정도 되고, 모든 사례마다 조건을 제시한다면 결국 업주의 소득은 전체의 20% 이내만 증빙이 있는 매출로 신고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음.

[부도 8] 할인조건 제시시 현금 지불 의향

(단위: %)



<부표 7> 가상 상황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증빙이 없는 현금 매출 신고 의향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5% 할인 조건 제시 시 현금 지불 의향	10% 할인 조건 제시 시 현금 지불 의향	현금 거래 하지 않음
전 체		2,339	40.5	36.7	43.9	19.4
성별	남 성	1,110	42.2	35.3	40.7	24.0
	여 성	1,229	39.0	37.9	46.8	15.3
연령	25~29세	292	40.2	36.6	45.5	17.9
	30~39세	686	39.1	36.8	45.6	17.7
	40~49세	643	37.2	32.1	44.2	23.7
	50~59세	494	42.2	38.9	40.7	20.3
	60~64세	224	51.0	44.7	42.6	12.7
학력	고졸 이하	1,101	40.6	38.2	42.3	19.5
	대졸 이상	1,234	40.5	35.5	45.2	19.4
	무응답	4	26.8	0.0	73.9	26.1
지역	수도권	1,114	37.2	36.9	45.4	17.7
	기타 광역시	529	43.4	45.2	37.1	17.7
	기타 시도	696	43.6	30.0	46.5	23.5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39.3	34.7	43.8	21.4
	사업주/자영업자	390	50.2	30.4	39.7	29.9
	무급가족종사자	98	38.5	32.8	46.3	20.9
	무직자	939	37.9	41.6	45.4	13.0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976	38.4	38.2	48.1	13.6
	1천만~4천만원	904	40.6	37.1	41.5	21.4
	4천만~8천만원	366	42.4	33.6	39.7	26.6
	8천만원 이상	92	53.8	28.3	38.7	33.0
납세 태도	전부 낸다	1,195	46.1	37.5	41.5	20.9
	줄이고 싶다	894	35.8	36.8	46.3	16.9
	내고 싶지 않다	250	30.7	32.3	46.4	21.3
세부담 수준	높음	966	37.2	33.1	46.3	20.6
	적당	1,189	42.4	40.6	40.8	18.7
	낮음	157	42.5	34.7	49.0	16.3
복권구입행태	정기적 구입	113	26.8	32.1	45.6	22.3
	가끔 구입	937	36.5	35.6	46.3	18.1
	구입 경험 없음	1,289	44.7	37.9	41.9	20.2
조세 제도 인지도	안다	817	44.1	32.6	46.7	20.7
	모른다	1,522	38.6	38.9	42.4	18.7

-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근로 형태별로는 취업자보다는 무직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음. 연령별로는 40~50대층이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으며, 60대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지불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할인조건을 제시할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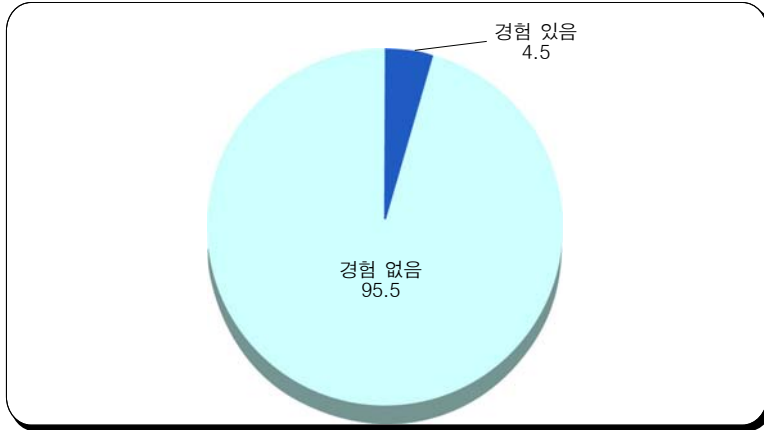
3) 불성실 신고에 대한 실제 경험

가) 소득신고 관련 불성실 신고 경험

- 지난 3년간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계상한 경험에 대한 질문 결과, 응답자 10명 중 9.5명 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경험이 있는 비율이 4.5%로 낮음. 연령별로는 40대층의 불성실 신고 경험이 6.1%로 높게 나타남.
- 근로 형태별로는 사업주/자영업자의 특성상 소득축소 신고 또는 공제 과다계상 경험(14.3%)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득이 100% 노출되는 임금근로자(4.4%)의 경우 사업주/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 신고 경험이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을 과다계상(허위자료 제출 등으로)하는 사례는 소수이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도 9] 소득 축소신고 / 공제 과다계상 경험 여부

(단위: %)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다계상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는 15.3%였으며, 4천만~8천만원은 9.2%, 1천만~4천만원은 5.6%, 1천만원 미만은 0.6%로 나타남.

<부표 8> 소득 축소신고 / 공제 과다계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 체		2,339	95.5	4.5
성별	남 성	1,110	92.9	7.1
	여 성	1,229	98.0	2.0
연령	25~29세	292	98.2	1.8
	30~39세	686	95.3	4.7
	40~49세	643	93.9	6.1
	50~59세	494	96.0	4.0
	60~64세	224	96.7	3.3
학력	고졸 이하	1,101	96.1	3.9
	대졸 이상	1,234	95.1	4.9
	무응답	4	89.6	10.4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2	95.6	4.4
	사업주/자영업자	390	85.7	14.3
	무급가족종사자	98	95.4	4.6
	무직자	939	99.6	0.4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99.4	0.6
	1천만원~4천만원 미만	904	94.4	5.6
	4천만원~8천만원 미만	366	90.8	9.2
	8천만원 이상	92	84.7	15.3
납세태도	전부 낸다	1,195	96.4	3.6
	줄이고 싶다	894	94.6	5.4
	내고싶지 않다	250	94.9	5.1
복권구입행태	정기적 구입	113	92.3	7.7
	가끔 구입	937	94.9	5.1
	구입 경험 없음	1,289	96.3	3.7
세부담 수준	높음	966	94.0	6.0
	적당	1,189	96.7	3.0
	낮음	157	95.1	4.9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817	93.6	6.4
	모른다	1,522	96.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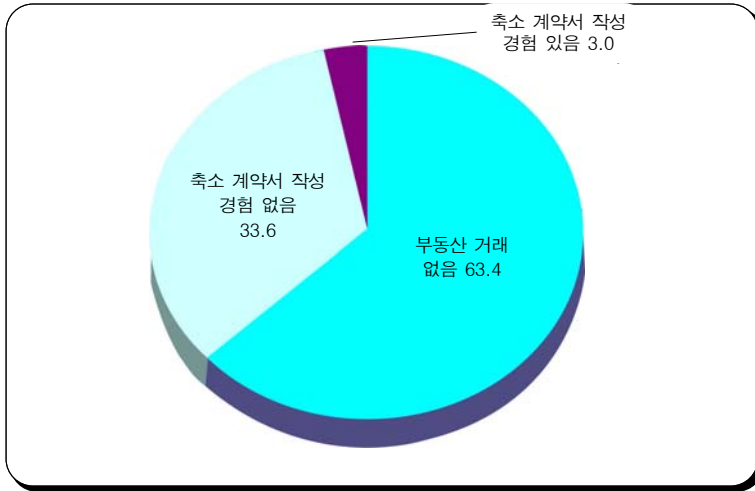
- 세부담 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6.0%가 불성실 신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모른다는 응답자에 비해 불성실 신고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나) 부동산 거래 관련

- 지난 3년간의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에 대한 질문 결과, 부동산거래 경험이 있는 응답자(전체 응답자의 36.6%) 중 91.8%가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8.2%는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세 신고시보다는 불성실 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 형태별로는 취업자가 무직자보다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많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거래 경험이 증가하여, 고소득층(8천만원 이상)에서는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또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부도 10]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여부

(단위: %)



-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가 축소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복권 구입을 정기적으로 하는 응답자가 축소계약서 작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담 수준이 낮다고한 응답자 중에서는 18.5%가 다운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부담이 줄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음.

<부표 9>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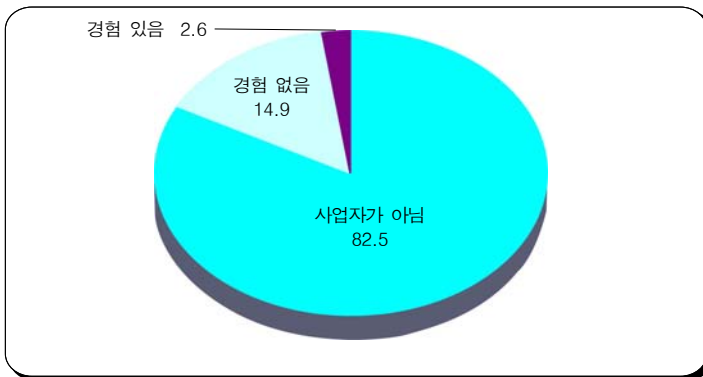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수	부동산 거래 없음	부동산거래 경험자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 체		2,339	63.4	91.8	8.2
성별	남 성	1,110	59.9	90.0	10.0
	여 성	1,229	66.5	93.7	6.3
연령	25~29세	292	80.5	85.6	14.4
	30~39세	686	67.0	93.3	6.7
	40~49세	643	56.1	93.2	6.8
	50~59세	494	57.2	90.9	9.1
	60~64세	224	64.9	89.1	10.9
학력	고졸 이하	1,101	63.1	91.3	8.7
	대졸 이상	1,234	63.7	92.3	7.7
	무응답	4	70.0	100.0	0.0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2	65.5	91.6	8.4
	사업주/자영업자	390	49.4	89.5	10.5
	무급가족종사자	98	52.4	87.4	12.6
	무직자	939	68.4	94.3	5.7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68.8	94.9	5.1
	1천만원~4천만원 미만	904	65.1	87.7	12.3
	4천만원~8천만원 미만	366	50.6	94.1	5.9
	8천만원 이상	92	41.3	88.9	11.1
납세태도	전부 낸다	1,195	62.0	92.4	7.6
	줄이고 싶다	894	66.1	91.7	8.3
	내고싶지 않다	250	60.6	89.1	10.9
복권구입행태	정기적 구입	113	67.2	88.1	11.9
	가끔 구입	937	61.8	90.8	9.2
	구입 경험 없음	1,289	64.2	93.0	7.0
세부담 수준	높음	966	59.2	92.2	7.8
	적당	1,189	66.5	92.2	7.8
	낮음	157	69.9	81.5	18.5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817	52.0	92.5	7.5
	모른다	1,522	59.5	91.1	8.9

다) 매출 신고 관련

-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경험에 대한 질문 결과, ‘사업자가 아님’이 8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매출축소 신고 또는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없음(14.9%), 경험 있음(2.6%)의 순임.
- 사업자만 분리해 살펴보면, 사업주나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의 13.5%가 매출축소 신고 또는 비용 과다계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도 11] 매출축소 신고 /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여부

(단위: %)



- 연령별로는 30~40대와 60대 층에서 매출 축소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매출액 축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10> 매출축소 신고 / 비용 과다계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사업자 아님	사업자의 경우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 체		2,339	82.5	85.1	14.9
성별	남 성	1,110	73.1	84.4	15.6
	여 성	1,229	91.0	87.8	12.2
연령	25~29세	292	95.2	95.8	4.2
	30~39세	686	86.5	82.2	17.8
	40~49세	643	76.6	84.6	15.4
	50~59세	494	78.1	89.5	10.5
	60~64세	224	80.7	79.4	20.6
학력	고졸 이하	1,101	81.7	87.4	12.6
	대졸 이상	1,234	83.3	83.2	16.8
	무응답	4	78.6	51.6	48.4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2	98.2	77.8	22.2
	사업주/자영업자	390	0.6	86.6	13.4
	무급가족종사자	98	98.9	0.0	100.0
	무직자	939	99.6	0.0	100.0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97.3	81.5	18.5
	1천만원~4천만원 미만	904	81.3	85.0	15.0
	4천만원~8천만원 미만	366	59.3	87.7	12.3
	8천만원 이상	92	29.4	81.2	18.8
납세태도	전부 낸다	1,195	83.8	85.7	14.3
	줄이고 싶다	894	81.7	85.2	14.8
	내고 싶지 않다	250	79.1	83.7	16.3
복권구입 행태	정기적 구입	113	74.3	87.2	12.8
	가끔 구입	937	81.3	84.0	16.0
	구입 경험 없음	1,289	84.1	86.1	13.9
세부담 수준	높음	966	79.3	85.0	15.0
	적당	1,189	84.7	85.1	14.9
	낮음	157	84.7	85.0	15.0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817	75.5	84.9	15.1
	모른다	1522	86.3	85.4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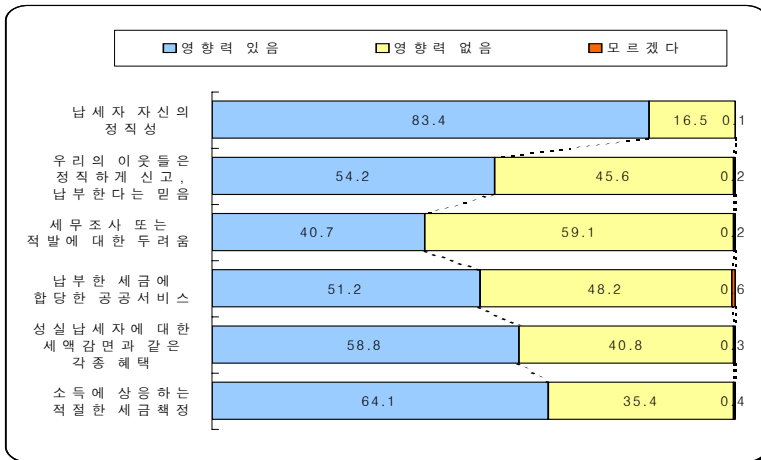
4) 세금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 자신의 태도 및 신뢰면에 있어서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83.4%)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우리의 이웃들은 정직하게 신고, 납부한다는 믿음’(54.2%), ‘세무조사 또는 적발에 대한 두려움’(40.7%)의 순으로 영향력이 큼.

[부도 12]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



-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 대책면에서는 ‘소득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금 책정’(63.2%)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각종 혜택’(59.7%), ‘납부한 세금에 합당한 공공서비스’(51.4%)의 순임.

<부표 11>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소 영향력 있음+매우 영향력 있음) 응답비율

(단위: 명, %)

구 분	응답 자수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	이웃들은 정직하게 신고, 납부한다 는 믿음	세무조사 적발에 대한 두려움	납부한 세금에 합당한 서비스 공공재 제공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액감면 / 각종 혜택	소득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금책정
전 체	1,571	83.4	54.2	40.7	51.4	59.7	63.2
성별	남 성	730	80.7	57.9	42.9	52.7	64.0
	여 성	841	85.8	50.9	38.8	50.2	61.1
연령	25~29세	219	87.7	67.3	44.9	53.4	60.5
	30~39세	437	80.7	56.4	45.5	51.6	62.4
	40~49세	399	79.5	52.6	39.7	46.6	55.3
	50~59세	336	83.3	49.1	36.9	58.2	60.9
	60~64세	180	93.7	45.5	33.7	46.3	60.0
학력	고졸 이하	767	82.3	50.2	36.3	48.6	60.8
	대졸 이상	800	84.5	58.1	44.9	54.2	58.6
	무응답	4	81.0	31.1	43.1	37.2	69.0
납세 태도	전부 낸다	937	87.1	55.2	40.5	50.4	62.5
	줄이고 싶다	531	77.3	51.7	39.3	54.0	55.4
	내고 싶지 않다	104	81.5	57.4	49.8	47.4	57.0
복권구 입행태	정기적 구입	60	65.5	48.8	36.7	47.9	37.3
	가끔 구입	607	82.2	51.6	43.2	51.2	63.6
	구입 경험 없음	904	85.4	56.2	39.3	51.8	58.6
세부담 수준	높음	576	81.5	50.4	41.8	51.8	55.3
	적당	848	85.5	55.8	40.4	48.9	60.9
	낮음	124	80.7	53.2	34.3	59.3	71.4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555	85.4	58.0	43.8	56.0	62.0
	모른다	1,016	82.3	52.0	39.0	48.9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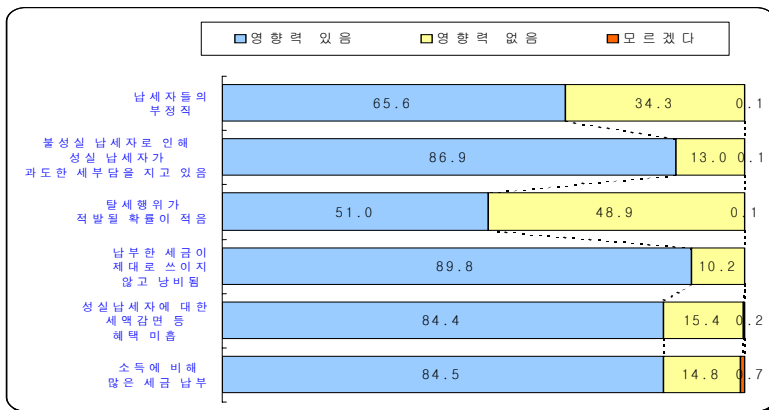
-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85.4%)일수록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이 성실납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복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응답자(65.5%)는 상대적으로 낮음.

나) 불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 태도 및 신뢰면에서는 ‘불성실 납세자로 인해 성실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이 86.9%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납세자들이 부정직하기 때문’ (65.6%),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적기 때문’ (51.0%)의 순으로 나타남.
- 탈세행위시 적발될 확률은 낮게 인식되어, 향후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탈세행위자를 철저히 적발, 조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부도 13] 불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



-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데 있어서 정부지원 및 대책면에서는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 89.8%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 (84.5%),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각종 혜택이 적기 때문’ (84.4%)의 순임.

<부표 12> 불성실납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

(단위: 명, %)

구 분		응답 자수	납세자 부정직	불성실 납세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의 납부한 세금 낭비	탈세 행위 적발 될 확률 적음	납부한 세금이 낭비됨	성실납세 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혜택 미흡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납부
전 체		768	65.6	86.9	51.0	89.8	84.4	84.5
성별	남 성	380	59.9	84.8	51.6	90.5	78.3	81.0
	여 성	388	71.1	89.0	50.4	89.2	90.4	87.9
연령	25~29세	73	70.9	81.6	67.1	82.4	86.9	73.7
	30~39세	249	67.7	88.4	51.2	92.1	89.4	85.3
	40~49세	244	61.4	88.2	52.8	89.6	82.4	87.7
	50~59세	158	63.9	84.6	36.4	88.4	78.9	84.6
	60~64세	44	73.6	88.9	66.2	95.6	82.6	79.0
학력	고졸 이하	333	68.1	88.0	51.4	88.8	82.8	84.4
	대졸 이상	434	63.6	86.1	50.7	90.6	85.7	84.5
	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0.0	100.0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359	68.4	86.2	52.1	91.2	84.8	81.4
	사업주/ 자영업자	98	58.1	89.0	48.3	90.8	79.9	80.3
	무급가족종사자	33	54.0	86.8	52.8	88.0	83.9	84.1
	무직자	279	65.9	87.2	50.4	87.9	85.5	90.0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302	64.1	86.1	49.7	86.9	85.9	87.5
	1천만4천만원	302	68.9	88.2	53.9	92.2	82.0	84.4
	4천만8천만원	141	64.1	86.2	46.7	90.8	87.1	79.8
	8천만원 이상	24	50.6	86.6	56.0	92.2	80.3	74.7
납세 태도	전부 낸다	259	66.9	89.4	54.3	88.9	81.5	84.8
	줄이고 싶다	364	65.2	85.2	48.2	87.7	83.9	82.3
	내고 싶지 않다	146	64.3	87.0	52.2	96.7	90.8	89.3
복권구 입형태	정기적 구입	53	67.1	83.4	44.9	84.9	86.0	78.2
	가끔 구입	330	65.2	86.9	54.9	90.1	81.8	82.2
	구입 경험 없음	385	65.7	87.5	48.5	90.3	86.4	87.3
세부담 수준	높음	390	66.8	91.3	52.6	91.4	85.8	90.9
	적당	341	64.1	81.4	47.7	87.7	83.9	78.2
	낮음	33	64.6	91.1	65.9	92.6	73.9	74.0
조세 제도 인지도	안다	263	68.1	87.8	51.9	88.3	82.3	81.8
	모른다	506	64.2	86.5	50.5	90.6	85.5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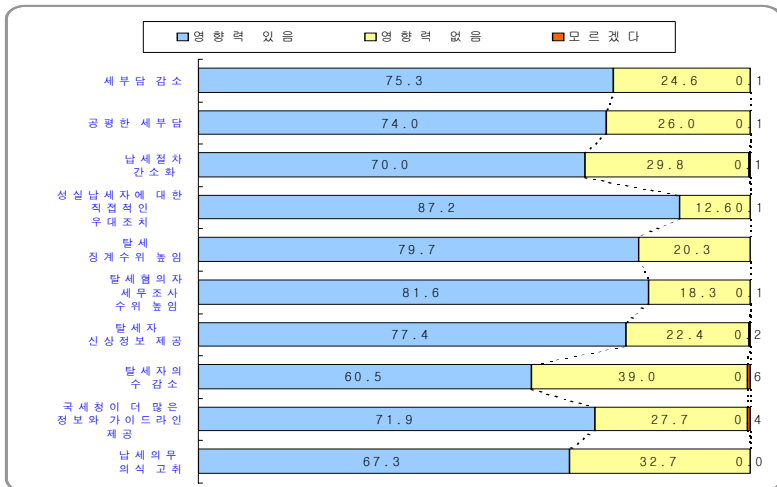
-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일수록, 납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5)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성실납세를 위해서 어떤 요인이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우대조치를 제공 한다’(87.2%)가 성실납세에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응답함. 이외에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수위를 높인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81.6%). 이 내용을 볼 때 납세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탈세자에 대한 대응에 대한 ‘탈세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다’든지, ‘탈세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응답됨.

[부도 14]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



<부표 13> 성실납부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인

(단위: 명, %)

구 분		응답 자수	세 부담 감소	탈세 징계 수위 높임	탈세 혐의 자에 대한 세무 조사	탈세 자 신상 정보 제공	세 부담 공평 화	납세 절차 간소 화	많은 정보 /가이드 라인 제공	납세 의무 의식 고취	성실 납세 자에 우대 조치 제공	탈세 자 수 감소
전 체		2,339	75.3	79.7	82.9	78.0	74.0	70.0	73.0	68.4	87.2	61.4
성별	남 성	1,110	74.7	78.1	82.3	78.7	75.6	70.4	72.2	67.6	85.3	63.7
	여 성	1,229	75.8	81.2	83.5	77.3	72.5	69.7	73.7	69.2	89.0	59.3
연령	25~29세	292	75.3	79.6	91.4	81.9	69.6	72.5	70.4	64.8	85.6	52.8
	30~39세	686	72.9	81.9	85.5	78.8	73.2	70.6	69.7	65.3	85.9	59.3
	40~49세	643	77.5	77.8	79.6	76.0	74.4	70.0	78.3	71.8	87.7	59.8
	50~59세	494	77.6	77.6	78.6	78.5	78.6	68.4	73.9	67.5	89.0	66.2
	60~64세	224	71.0	83.8	83.3	75.3	70.2	68.9	68.8	75.1	88.4	72.4
학력	고졸 이하	1,101	74.6	79.1	80.5	76.6	73.3	68.7	74.0	70.9	87.7	63.7
	대졸 이상	1,234	76.1	80.4	85.1	79.3	74.6	71.4	72.2	66.3	86.9	59.3
	무응답	4	40.5	45.8	62.2	67.2	59.6	32.1	32.1	58.9	83.6	56.9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74.0	82.1	84.7	80.6	71.9	67.8	71.5	66.0	86.9	57.9
	사업주/자영업자	390	77.3	73.4	76.3	71.6	74.2	68.9	69.7	68.3	84.4	62.9
	무급가족종사자	98	65.3	76.1	78.5	78.5	84.5	74.2	80.7	63.3	93.3	61.0
	무직자	939	76.7	80.4	84.4	78.1	74.8	72.2	74.9	71.3	88.1	64.1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976	76.4	79.4	82.6	77.7	75.0	71.6	74.3	70.5	89.5	64.8
	1천만~4천만원	904	73.4	80.9	84.3	78.4	71.4	68.9	72.5	66.0	84.8	56.8
	4천만~8천만원	366	75.5	78.6	81.4	78.8	75.3	69.3	72.5	69.3	86.8	64.1
	8천만원 이상	92	80.9	76.5	79.1	73.3	82.4	67.7	65.8	67.3	88.6	58.7
납세 태도	전부 낸다	1,195	75.6	80.8	82.3	78.3	75.3	69.7	74.2	70.3	88.8	62.1
	줄이고 싶다	894	75.2	78.6	83.9	78.2	71.8	70.0	72.7	66.6	86.4	61.2
	내고 싶지 않다	250	74.1	78.6	82.3	75.9	75.3	71.8	68.1	65.7	82.7	58.6
복권구 입행태	정기적 구입	113	67.9	74.6	73.4	68.1	68.0	67.1	69.2	73.9	78.8	55.8
	가끔 구입	937	72.6	81.4	84.7	79.9	71.0	70.9	74.6	67.5	87.5	57.2
	구입 경험 없음	1,289	77.9	78.9	82.4	77.5	76.6	69.7	72.1	68.6	87.8	64.9
세부담 수준	높음	966	75.6	78.8	80.5	78.5	76.4	71.6	75.2	66.0	85.3	57.9
	적당	1,189	75.4	80.5	84.3	76.9	73.7	67.9	70.4	69.8	89.6	62.4
	낮음	157	69.7	81.8	88.8	81.9	57.6	72.0	75.5	73.6	83.3	68.7
조세 제도 인지도	안다	817	75.5	79.4	81.8	80.1	77.7	71.3	75.2	68.3	91.2	64.0
	모른다	1,522	75.2	79.9	83.5	76.9	71.9	69.4	71.7	68.5	85.1	59.9

-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성실납세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안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탈세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탈세자 신상정보를 제공해 탈세행위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금 책정 등의 긍정적인 세금제도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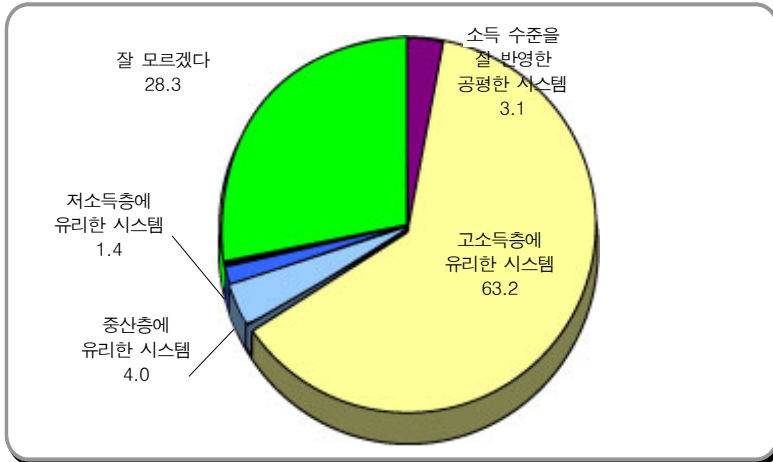
다. 조세제도 평가

1)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

- 국민 10명 중 6명(63.2%)은 현행 조세제도에 대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반면에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는 응답 비율은 3.1%에 불과함.
- 학력이 높을수록 현행 조세제도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라고 인식함.
- 고소득층(8천만원 이상)에서는 현행 조세제도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담 수준이 높음 집단에서는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함.

[부도 15]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부표 14>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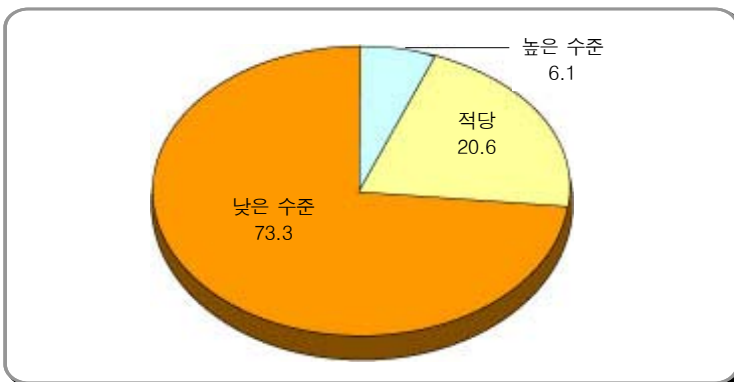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수	소득 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	중산층에 유리한 시스템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	잘 모르겠다
전 체		2,339	3.1	63.2	4.0	1.4	28.3
성별	남 성	1,110	3.7	66.6	4.8	2.2	22.7
	여 성	1,229	2.5	60.2	3.3	0.8	33.3
연령	25~29세	292	1.9	66.6	2.7	1.5	27.3
	30~39세	686	3.4	65.1	2.9	1.0	27.6
	40~49세	643	4.2	66.1	5.1	1.9	22.7
	50~59세	494	2.1	56.8	6.1	1.6	33.5
	60~64세	224	2.3	59.2	1.6	0.8	36.1
학력	고졸 이하	1,101	3.5	59.2	5.0	0.8	31.6
	대졸 이상	1,234	2.7	66.8	3.2	2.0	25.3
	무응답	4	0.0	73.2	0.0	0.0	26.8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912	4.3	67.1	3.9	2.2	22.6
	사업주/자영업자	390	4.6	65.4	4.5	2.6	22.9
	무급가족종사자	98	1.9	59.3	4.7	3.5	30.6
	무직자	939	1.4	59.0	3.9	0.0	35.8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976	1.9	59.9	3.9	0.7	33.6
	1천만~4천만원	904	3.5	64.7	4.3	1.3	26.1
	4천만~8천만원	366	4.1	69.8	2.5	2.5	21.1
	8천만원 이상	92	6.5	57.6	8.2	6.1	21.5
납세 태도	전부 낸다	1,195	3.6	62.0	4.2	1.3	28.9
	줄이고 싶다	894	2.3	64.4	3.8	1.2	28.3
	내고 싶지 않다	250	3.3	65.1	4.0	2.6	25.0
복권구입행태	정기적 구입	113	4.8	64.9	3.4	2.9	24.0
	가끔 구입	937	3.5	67.4	3.4	1.2	24.5
	구입 경험 없음	1,289	2.6	60.1	4.5	1.4	31.4
세부담 수준	높음	966	2.8	70.2	4.3	2.1	20.6
	적당	1,189	3.5	59.0	3.9	1.0	32.6
	낮음	157	1.9	54.0	3.5	1.0	39.5
조세 제도 인지도	안다	817	4.1	68.0	4.6	2.4	21.0
	모른다	1,522	2.5	60.7	3.7	0.9	32.2

2) 정부 혜택 수준

- 국민 10명 중 7명(73.3%)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정부 혜택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연령이 낮을수록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은 낮다고 인식함. (80.7% > 75.2% > 73.5% > 67.5%)
- 거주지역별로는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정부 혜택이 낮다고 응답함. (86.7%, 84.4%, 79.5%)
-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혜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함. (71.7% < 73.5% < 74.7% < 81.1%)
- 납세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낮다고 응답함.

[부도 16] 정부 혜택 수준

(단위: %)



<부표 15> 정부 혜택 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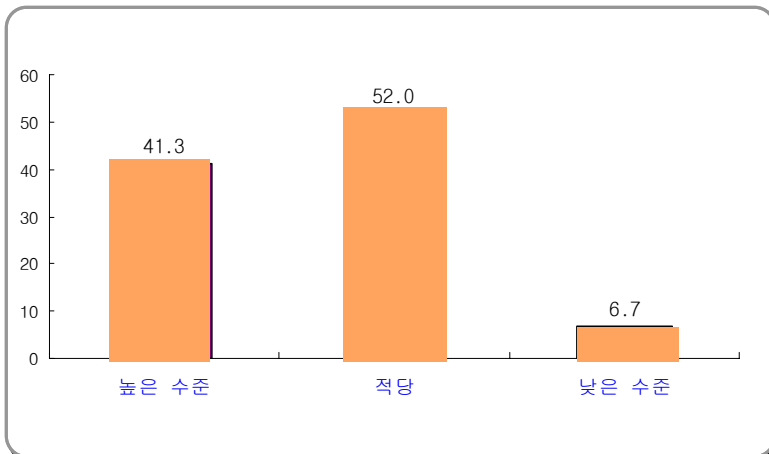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높은 수준	적당	낮은 수준
전 체		2,339	6.1	20.6	73.3
성별	남 성	1,110	6.5	21.5	72.0
	여 성	1,229	5.8	19.9	74.4
연령	25~29세	292	2.8	16.5	80.7
	30~39세	686	4.9	19.9	75.2
	40~49세	643	5.3	21.2	73.5
	50~59세	494	9.7	22.9	67.5
	60~64세	224	8.7	21.8	69.5
학력	고졸 이하	1,101	7.8	22.8	69.4
	대졸 이상	1,234	4.7	18.7	76.7
	무응답	4	0.0	26.8	73.2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2	5.5	19.6	75.0
	사업주/자영업자	390	9.2	19.4	71.4
	무급가족종사자	98	8.2	22.3	69.5
	무직자	939	5.2	22.0	72.8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5.5	22.8	71.7
	1천만~4천만원	904	6.9	19.6	73.5
	4천만~8천만원	366	5.8	19.5	74.7
	8천만원 이상	92	6.9	12.0	81.1
납세태도	전부 낸다	1,195	6.5	25.2	68.3
	줄이고 싶다	894	6.5	18.2	75.2
	내고 싶지 않다	250	3.1	7.1	89.8
복권구입 행태	정기적 구입	113	15.2	23.2	61.6
	가끔 구입	937	5.7	17.5	76.7
	구입 경험 없음	1,289	5.6	22.5	71.8
세부담 수준	높음	966	7.7	9.2	83.1
	적당	1,189	4.5	32.5	63.0
	낮음	157	9.8	3.4	86.1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817	7.4	18.7	73.8
	모른다	1,522	5.4	21.6	72.9

3) 세부담 수준

-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민 절반(52.0%)이 적당하다고 인식함.
- 연령별로는 40~49세에서 세부담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49.5%)
-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세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36.7% < 40.2% < 51.0% < 61.7%)
- 납세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37.2% < 42.0% < 58.3%)

[부도 17] 세부담 수준

(단위: %)



<부표 16> 세부담 수준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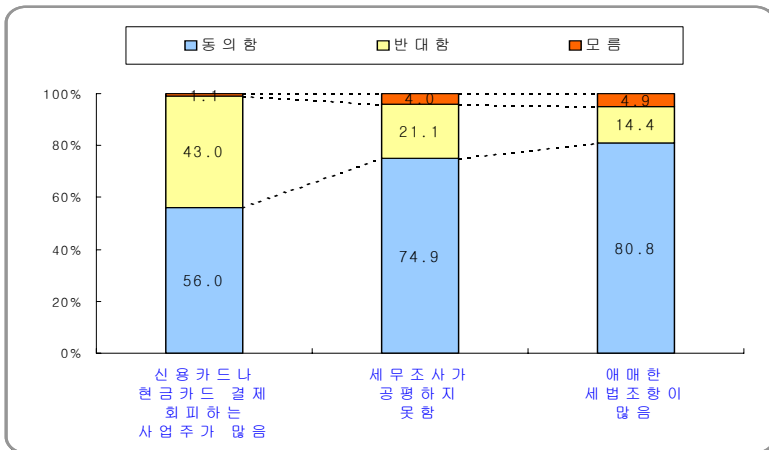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높은 수준	적당	낮은 수준
전 체		2,339	41.3	52.0	6.7
성별	남 성	1,110	39.7	52.7	7.6
	여 성	1,229	42.7	51.4	5.9
연령	25~29세	292	33.6	57.1	9.3
	30~39세	686	41.4	50.4	8.2
	40~49세	643	49.5	45.0	5.5
	50~59세	494	39.8	54.2	6.0
	60~64세	224	30.8	65.6	3.6
학력	고졸 이하	1,101	37.9	54.6	7.5
	대졸 이상	1,234	44.4	49.7	6.0
	무응답	4	13.7	70.0	16.4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2	44.3	50.7	5.0
	사업주/자영업자	390	49.2	44.9	5.9
	무급가족종사자	98	45.1	45.8	9.1
	무직자	939	34.7	56.8	8.5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36.7	54.8	8.5
	1천만~4천만원	904	40.2	53.8	6.0
	4천만~8천만원	366	51.0	45.1	3.9
	8천만원 이상	92	61.7	32.4	5.9
납세태도	전부 낸다	1,195	37.2	54.8	6.9
	줄이고 싶다	894	42.0	50.0	6.7
	내고 싶지 않다	250	58.3	35.0	5.8
복권구입 행태	정기적 구입	113	32.9	60.3	6.2
	가끔 구입	937	42.5	47.5	9.4
	구입 경험 없음	1,289	41.2	52.4	4.8
세부담 수준	높음	966	100.0	0.0	0.0
	적당	1,189	0.0	100.0	0.0
	낮음	157	0.0	0.0	100.0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817	44.4	49.3	4.3
	모른다	1,522	39.6	51.7	8.0

4) 세금 관련 의견

- ‘애매한 세법조항이 많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80.8%)이 동의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74.9%)이 동의함.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사업주가 주위에 많다’라는 주장에 대해 절반(56.0%) 정도가 동의함.
- 여성보다는 남성이 세금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높음.
-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세무조사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강함.

[부도 18] 세금 관련 의견

(단위: %)



<부표 17> 세금 관련 의견

(단위: 명, 점)

구 분		응답자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사업주 많음	세무조사가 공평하지 못함	애매한 세법조항 많음
전 체		2,339	56.0	74.9	80.8
성별	남 성	1,110	55.9	73.8	81.0
	여 성	1,229	56.0	75.9	80.6
연령	25~29세	292	60.0	73.4	81.3
	30~39세	686	55.6	76.7	84.2
	40~49세	643	55.7	76.4	79.0
	50~59세	494	56.2	73.6	77.6
	60~64세	224	52.0	69.9	81.9
학력	고졸 이하	1,101	57.7	77.6	82.4
	대졸 이상	1,234	54.4	72.5	79.4
	무응답	4	43.2	57.5	62.2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2	55.2	73.8	79.2
	사업주/자영업자	390	49.3	72.8	85.6
	무급가족종사자	98	55.6	78.3	80.9
	무직자	939	59.5	76.4	80.3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976	58.7	76.4	80.4
	1천만~4천만원	904	55.6	74.4	80.4
	4천만~8천만원	366	52.0	72.0	81.6
	8천만원 이상	92	45.5	74.8	85.5
납세태도	전부 낸다	1,195	53.6	76.7	75.9
	줄이고 싶다	894	58.6	71.8	87.2
	내고 싶지 않다	250	57.7	87.5	81.3
복권구입 행태	정기적 구입	113	51.7	77.2	84.1
	가끔 구입	937	56.3	75.8	81.9
	구입 경험 없음	1,289	56.0	74.0	79.7
세부담 수준	높음	966	56.7	76.7	82.9
	적당	1,189	55.2	71.8	78.6
	낮음	157	50.2	87.5	85.4
조세제도 인지도	안다	817	59.1	74.7	79.8
	모른다	1,522	54.2	75.0	81.3

4. 모집단 분포 및 표본할당

			취업자(계)	임금 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서울	남 자	합계	255	177	76	2	11
		25~29세	31	30	1	0	3
		30~39세	86	68	17	1	2
		40~49세	76	46	29	1	2
		50~59세	48	26	22	0	2
		60~64세	14	7	7	0	2
	여 자	합계	149	112	25	12	33
		25~29세	33	32	1	0	4
		30~39세	48	38	7	3	8
		40~49세	39	25	9	5	8
		50~59세	23	13	6	4	9
		60~64세	6	4	2	0	4
경기	남 자	합계	278	194	82	2	9
		25~29세	31	29	2	0	1
		30~39세	102	80	21	1	2
		40~49세	95	57	37	1	2
		50~59세	42	23	19	0	2
		60~64세	10	5	5	0	2
	여 자	합계	143	101	24	18	33
		25~29세	25	23	1	1	3
		30~39세	46	35	7	4	10
		40~49세	45	28	9	8	8
		50~59세	20	11	5	4	8
		60~64세	7	4	2	1	4
부산	남 자	합계	84	57	26	1	5
		25~29세	8	7	1	0	1
		30~39세	26	20	5	1	1
		40~49세	27	17	10	0	1
		50~59세	19	11	8	0	1
		60~64세	4	2	2	0	1
	여 자	합계	49	33	9	7	13
		25~29세	8	8	0	0	1
		30~39세	14	10	2	2	3
		40~49세	15	9	3	3	3
		50~59세	10	5	3	2	4
		60~64세	2	1	1	0	2

			취업자(계)	임금 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대구	남 자	합계	59	38	21	0	3
		25~29세	5	5	0	0	1
		30~39세	20	15	5	0	1
		40~49세	21	11	10	0	0
		50~59세	11	6	5	0	1
		60~64세	2	1	1	0	0
	여 자	합계	33	22	6	5	9
		25~29세	5	5	0	0	1
		30~39세	10	7	1	2	3
		40~49세	10	6	2	2	2
		50~59세	6	3	2	1	2
		60~64세	2	1	1	0	1
인천	남 자	합계	65	46	19	0	3
		25~29세	8	7	1	0	1
		30~39세	23	18	5	0	1
		40~49세	22	14	8	0	1
		50~59세	10	6	4	0	0
		60~64세	2	1	1	0	0
	여 자	합계	35	25	6	4	8
		25~29세	5	5	0	0	1
		30~39세	11	8	2	1	2
		40~49세	13	8	3	2	2
		50~59세	5	3	1	1	2
		60~64세	1	1	0	0	1
광주	남 자	합계	33	23	10	0	1
		25~29세	3	3	0	0	0
		30~39세	12	9	3	0	1
		40~49세	11	7	4	0	0
		50~59세	5	3	2	0	0
		60~64세	2	1	1	0	0
	여 자	합계	20	13	4	3	4
		25~29세	3	3	0	0	0
		30~39세	7	5	1	1	1
		40~49세	7	4	2	1	1
		50~59세	3	1	1	1	1
		60~64세	0	0	0	0	1

			취업자(계)	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계)
대전	남자	합계	35	25	10	0	2
		25~29세	3	3	0	0	0
		30~39세	11	9	2	0	0
		40~49세	12	8	4	0	1
		50~59세	7	4	3	0	1
		60~64세	2	1	1	0	0
	여자	합계	19	13	4	2	5
		25~29세	3	3	0	0	0
		30~39세	6	4	1	1	1
		40~49세	6	4	1	1	1
		50~59세	4	2	2	0	2
		60~64세	0	0	0	0	1
울산	남자	합계	30	24	6	0	1
		25~29세	3	3	0	0	0
		30~39세	10	9	1	0	0
		40~49세	11	8	3	0	0
		50~59세	6	4	2	0	1
		60~64세	0	0	0	0	0
	여자	합계	12	8	3	1	4
		25~29세	2	2	0	0	0
		30~39세	4	3	1	0	1
		40~49세	4	2	1	1	2
		50~59세	2	1	1	0	1
		60~64세	0	0	0	0	0
강원	남자	합계	36	22	13	1	2
		25~29세	3	3	0	0	0
		30~39세	9	7	2	0	0
		40~49세	12	7	5	0	0
		50~59세	8	4	4	0	0
		60~64세	3	1	2	0	0
	여자	합계	22	12	5	5	5
		25~29세	2	2	0	0	0
		30~39세	5	4	0	1	1
		40~49세	7	3	2	2	2
		50~59세	5	2	2	1	1
		60~64세	3	1	1	1	1

			취업자 (계)	임금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충 북	남 자	합계	36	22	13	1	1
		25~29세	3	3	0	0	0
		30~39세	11	8	2	1	0
		40~49세	12	7	5	0	0
		50~59세	7	3	4	0	0
		60~64세	3	1	2	0	0
	여 자	합계	22	12	5	5	4
		25~29세	2	2	0	0	0
		30~39세	5	4	1	0	1
		40~49세	6	3	1	2	1
		50~59세	6	2	2	2	1
		60~64세	3	1	1	1	1
충 남	남 자	합계	49	29	19	1	1
		25~29세	5	5	0	0	0
		30~39세	15	11	3	1	0
		40~49세	14	8	6	0	0
		50~59세	11	4	7	0	1
		60~64세	4	1	3	0	0
	여 자	합계	31	14	7	10	5
		25~29세	3	3	0	0	0
		30~39세	7	4	1	2	1
		40~49세	9	4	2	3	2
		50~59세	7	2	2	3	1
		60~64세	5	1	2	2	1
전 북	남 자	합계	41	24	16	1	2
		25~29세	3	3	0	0	0
		30~39세	12	9	3	0	0
		40~49세	12	7	5	0	1
		50~59세	10	4	5	1	1
		60~64세	4	1	3	0	0
	여 자	합계	28	13	7	8	6
		25~29세	3	3	0	0	0
		30~39세	6	4	1	1	1
		40~49세	8	3	2	3	2
		50~59세	8	2	3	3	2
		60~64세	3	1	1	1	1

			취업자(계)	임금 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전 남	남 자	합계	44	23	19	2	2
		25~29세	3	3	0	0	0
		30~39세	12	8	3	1	1
		40~49세	13	7	6	0	1
		50~59세	12	4	7	1	0
		60~64세	4	1	3	0	0
	여 자	합계	32	10	10	12	5
		25~29세	2	2	0	0	0
		30~39세	6	3	1	2	1
		40~49세	9	3	2	4	1
		50~59세	9	1	4	4	2
		60~64세	6	1	3	2	1
경 북	남 자	합계	66	39	25	2	2
		25~29세	6	6	0	0	0
		30~39세	20	14	5	1	0
		40~49세	21	12	8	1	1
		50~59세	14	6	8	0	1
		60~64세	5	1	4	0	0
	여 자	합계	44	19	11	14	8
		25~29세	4	4	0	0	1
		30~39세	10	6	2	2	2
		40~49세	12	5	3	4	2
		50~59세	12	3	4	5	2
		60~64세	6	1	2	3	1
경 남	남 자	합계	79	52	26	1	3
		25~29세	8	7	1	0	1
		30~39세	27	21	5	1	1
		40~49세	26	16	10	0	0
		50~59세	14	7	7	0	1
		60~64세	4	1	3	0	0
	여 자	합계	49	26	12	11	9
		25~29세	5	5	0	0	1
		30~39세	14	10	2	2	3
		40~49세	13	7	3	3	2
		50~59세	12	3	5	4	2
		60~64세	5	1	2	2	1

			취업자 (계)	임금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제주	남 자	합계	14	8	6	0	0
		25~29세	1	1	0	0	0
		30~39세	5	4	1	0	0
		40~49세	4	2	2	0	0
		50~59세	3	1	2	0	0
		60~64세	1	0	1	0	0
	여 자	합계	10	5	3	2	1
		25~29세	1	1	0	0	0
		30~39세	3	2	1	0	1
		40~49세	3	1	1	1	0
		50~59세	3	1	1	1	0
		60~64세	0	0	0	0	0

5. 실증분석용 Stata 프로그램

* 목적: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한 납세의식지수
작성

```
clear
capture log close
# delimit;
set more off;
set mem 100M;

log using "C:/tax_pca/tax_pca_final.log", replace;

use "C:/tax_pca/data(0703).dta", clear;

*** 납세의식 및 납세행위변수 설정;

*납세성향변수;

gen p21=1 if q31<=2 ;
replace p21=0 if q31>=3;

gen p22=1 if q32==1 ;
replace p22=0 if q32==2;
```

```
gen p23=1 if q321==1 ;
replace p23=0 if q321==2;
```

* 납세순응행위변수;

```
gen p11=1 if q361==1 ;
replace p11=0 if q361==2;
```

```
gen p111=0 if q362==2 ;
replace p111=1 if q362==1 |q362==0;
```

```
gen p112=0 if q363==2 ;
replace p112=1 if q363==1 | q363==0;
```

* 가상납세순응행위변수;

```
gen p12=1 if q37==1 ;
replace p12=0 if q37==2;
```

```
gen p13=1 if q38==3 ;
replace p13=0 if q38<=2;
```

*조세형평도;

```
gen x31=1 if q41==1 ;
replace x31=0 if q41~1;
```

```

gen x311=2 if q41==1 ;
replace x311=1 if q41==5;
replace x311=0 if q41==2 | q41==4 | q41==3;

```

```

gen x32=2 if q42==3 ;
replace x32=1 if q42==2 | q42==4;
replace x32=0 if q42==1 | q42==5;

```

```

gen x33=2 if q43==3 ;
replace x33=1 if q43==2 | q43==4;
replace x33=0 if q43==1 | q43==5;

```

** 조세이해도(주관적21, 객관적22,23);

```

gen x21=1 if q21<=2 ;
replace x21=0 if q21>= 3;

```

```

gen x22=1 if q22==2 ;
replace x22=0 if q22~=2 ;

```

```

gen x23=1 if q23==2 ;
replace x23=0 if q23~=2;
gen x20=x22+x23;

```

* 외생변수 (11소득, 12교육, 13직업, 14결혼, 15성별, 16나이, 17지역, 18불확실성에 대한 선호);


```

replace i8=578 if i8==. & i8a==1;
replace i8=2369 if i8==. & i8a==2;
replace i8=4930 if i8==. & i8a==3;
replace i8=12675 if i8==. & i8a==4;

```

```

gen x11=i8;
gen x12=i3;

```

```

gen x12i=1 if x12>=3;
replace x12i=0 if x12<3;

```

```

gen x11i=1 if x11>=4000;
replace x11i=0 if x11<4000;

```

```

gen x13=2 if i5==2 ;
replace x13=1 if i5==1;
replace x13=0 if i5==3 | i5==4;

```

```

gen x13i=1 if x13==2;
replace x13i=0 if x13<2;

```

```

gen x14=1 if i4==1 ;
replace x14=0 if i4==2;

```

```

gen x15=1 if q12==1 ;
replace x15=0 if q12==2;

```

```
gen x16=sq1;
```

```
gen x17=q11;
```

```
gen x18=2 if i6==1 ;
replace x18=1 if i6==2;
replace x18=0 if i6==3;
```

```
* 조세이해도 지수;
pca x22 x23 x21 [w=wt], comp(1);
predict xi21 xi22 xi23, f;
```

```
* 조세형평도지수;
pca x311 x32 x33 [w=wt], comp(1);
predict xi31 xi32 xi33, f;
```

```
* 성실납세의향지수;
```

```
pca p21 p22 p23 [w=wt] , comp(1);
predict pi21 pi22 pi23 , f;
```

```
* 실제납세순응행위지수;
```

```
pca p11 p111 p112 [w=wt], comp(1);
predict pi11 pi12 pi13 , f;
```

*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

```
pca p12 p13 [w=wt], comp(1);
predict pi12i pi13i, f;
```

* (0,1) 지수화;

** 조세이해도 지수;

```
egen maxxi21=max(xi21);
egen minxi21=min(xi21);
gen xi2=(xi21-minxi21)/(maxxi21-minxi21);
```

** 조세형평도지수;

```
egen maxxi32=max(xi32);
egen minxi32=min(xi32);
gen xi3=(xi32-minxi32)/(maxxi32-minxi32);
```

** 성실납세의향지수;

```
egen maxpi22=max(pi22);
egen minpi22=min(pi22);
gen pi2=(pi22-minpi22)/(maxpi22-minpi22);
```

** 실제납세순응행위지수;

```
egen maxpi11=max(pi11);
egen minpi11=min(pi11);
gen pi1=(pi11-minpi11)/(maxpi11-minpi11);
```

```

**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
egen maxpi12i=max(pi12i);
egen minpi12i=min(pi12i);
gen pili=(pi12i-minpi12i)/(maxpi12i-minpi12i);

```

```

*지수들의 기술통계량;
sum xi2 xi3 pi2 pi1 pili;

```

```

*직업군별 지수 기술통계량;
sort x11i;
by x11i: sum xi2 xi3 pi2 pi1 pili;

```

```

sort x12i;
by x12i: sum xi2 xi3 pi2 pi1 pili;

```

```

sort x13i;
by x13i: sum xi2 xi3 pi2 pi1 pili;

```

```

*통합지수만들기;
pca pi1 pi2 xi2 xi3 [w=wt], comp(2);
predict pii1 pii2 xii2 xii3, f;

```

```

egen maxpii1=max(pii1);
egen minpii1=min(pii1);
gen pii1=(pii1-minpii1)/(maxpii1-minpii1);

```

```

*직업군별 총괄지수 기술통계량;

```

```

gen x111i=1 if x11>=8000;
replace x111i=2 if x11>=4000 & x11<8000;
replace x111i=3 if x11<4000 & x11>=1000;
replace x111i=4 if x11<1000;

```

```

sort x111i;
by x111i: sum piii1 ;

```

```

sort i3;
by i3: sum piii1 ;

```

```

sort i5;
by i5: sum piii1 ;

```

```

*실제납세순응행위도회귀분석(기본모형);
reg pi1 pi2 xi2 xi3;

```

```

*가상납세순응행위도회귀분석;
reg pili pi2 xi2 xi3;

```

```

*실제납세순응행위도회귀분석(외생변수포함);
reg pi1 pi2 xi2 xi3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

```

*가상납세순응행위도회귀분석;
reg pili pi2 xi2 xi3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

```

log close;

```

6. 기타 기술통계량

<부표 18> 최고치를 100점으로 한 조세이해도, 형평도, 납세의향, 순응행위도 지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치(<표 III-4>)	최고치(100점 만점)만을 고려한 평균치
조세이해도지수	0.552	0.552
조세형평도지수	0.461	0.387
성실납세의향지수	0.690	0.688
납세순응행위지수	0.946	0.930
가상순응행위지수	0.323	0.372

<부표 19> 조세이해도, 형평도, 납세의향, 순응행위도 원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세이해도변수	0.745	0.317	0.203	1.172
조세형평도변수	0.855	0.551	-0.257	2.206
성실납세의향변수	0.736	0.378	-0.020	1.070
납세순응행위변수	0.926	0.222	-0.316	0.996
가상순응행위변수	0.433	0.377	0.079	1.163

<국문초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작금의 국내외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는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여 재정수요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재정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넓은 세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통하여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 조세 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막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벗어나서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단 시일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및 조사가 필요하다.

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 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납세순응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를 작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지수를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는데 있다.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의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지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여부를 종합한 지수이다. 성실납세의향지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을 합해 개인별 지수를 구한 것에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변수들의 정보를 종합한 지수이다. 납세순응도지수는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와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지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조세이해도, 납세순응도, 조세제도 형평성 변수, 인구통계특성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문지 문항을 설계하였고 전국 16개 시·도별로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2,399명을 무작

위로 추출하여 2008년 5월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제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지수 (실제순응행위지수 및 가상순응행위지수)라는 개별 지수를 개발·점수화하였고 또한 이러한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납세의식의 고취와 납세순응행위도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하여 실제 납세순응행위 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직업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성실납부의향은 다른 어떤 지수변수보다 더 납세순응결정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납세순응행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조세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든 성실납세의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 보다 가상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부의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상순응행위에서는 적극적인 납세의향이 중요하나, 실제순응행위에서는 직업 환경이나 소득수준 등 다

른 외생변수의 영향이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세이해도는 실제순응행위에 대하여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히려 탈세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괄납세의식지수의 평균값은 100점 만점에 78.4점이고 고소득자, 고학력자,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의의는 향후 기본적인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납세의식지수의 연도별 흐름을 추적하여 조세관련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

<Abstract>

Development of Tax Attitude Index: Public Opinion Survey in Korea

Myung-Ho Park · Bonggeun Kim · Kim, Chung Kweon

There has been widespread concern that the fiscal soundness in Korea may be weakened not only by the growing need for government spending, but also by the reduction in tax revenues due to economic downturn. Facing these difficult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wards restructuring existing tax policies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and to diversify tax revenue sources.

Given the expectation of unfavorable future fiscal conditions and also the fact that the existing tax system works based on self-reporting, enhancing voluntary compliance by taxpayers seems to become ever more important. The reduction of the gap between potential tax revenues and self-reported tax liabiliti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ax compliance is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in solving the ongoing fiscal difficulties.

While it is well known that voluntary tax compliance behaviors are based on taxpayers' tax attitudes, there is not

much systematic research on such attitudes. Therefore, instead of simply speculating upon whether or not the Korean population has a desirable tax attitude, there is a clear need to pursue more formal empirical research. As tax attitudes are resistant to improvement in the short run,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monitor and investigate the changes in tax attitude.

Tax attitude can be defined as the taxpayer's comprehensive awareness of and social values concerning taxation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first to measure the individual index numbers for tax understanding, tax fairness, willingness to comply, and tax compliance behavior, and second to generate a comprehensive tax attitude index summarizing these indices. The tax understanding index is a combination of the perceived personal understanding of various tax items in addition to the actual understanding of real tax numbers such as value added taxes. The tax fairness index is also a combined index which consists of a self-evaluation of the current tax system in terms of the perceived fairness of one's own tax payment based on personal income level, paired with the fairness of government services in exchange for tax payments. The willingness to comply represents both active compliance in terms of civil responsibility and passive compliance through avoidance of the penalty threat of tax evasion. The tax compliance behavior index consists of the hypothetical tax compliance behavior and the real tax

compliance behavior.

In order to systematically measure the tax attitude level of Korean taxpayers, this report has designed the survey questionnaires with four sections, consisting of tax understanding, tax compliance, tax fairness, and demographic variables, each in turn. The survey was conducted in May 2008 from a randomly selected pool of 2,399 taxpayers aged 25 to 64 from sixteen different provinces, using telephone, fax, or e-mail. In order to strengthen the generalizability of the research, different sample numbers were assigned to various subgroups classified by employment status, region, age group, and gender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population distributions based on the 2005 population census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ur report focuses on two issues: One is a measurement of the tax attitude index for Korean taxpayers; another issue is the measurement of changes in the tax attitude index triggered by changes in tax policies and tax administration services, as well as changes in other extraneous variables. Using the survey data, the report measures the individual indices for tax understanding, tax fairness, willingness to comply, and tax compliance behavior (both real and hypothetical), and also measures the comprehensive tax attitude index representing other indices.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future tax policy for enhancing tax attitudes and tax compliance behaviors, we also analyze the tax compliance model which considers the

casual relation of the real tax compliance behaviors with willingness to comply, tax understanding, perceived fairness, and other extraneous variable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after having controlled the effects of other extraneous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conditions and income levels, a taxpayer's willingness to comply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upon his/her tax compliance decisions, regardless of whether this willingness is a result of the active acceptance of tax responsibility or the passive avoidance of penalty. The effect of such willingness is relatively larger in hypothetical tax compliance situations (hereafter, hypothetical cases) than in real tax compliance situations (hereafter, real cases). We speculate that the willingness to comply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hypothetical case as the effect of willingness can be undermined by other extraneous variables in real cases. On the other hand, in opposition to our prior expectation, tax understanding has a negative effect on compliance in the real case. This result may imply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induces taxpayers to commit more tax evasion.

The survey data shows that the Korean taxpayers' average tax attitude index is 78.4 points in a 100-point scale, and that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tax attitude index. The data also shows that the self-employed group tends to show a lower tax attitude index. The value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a long-term

basis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tax policies on tax compliance as long as future follow-up studies continue to monitor the annual tax attitude indices by adopting the basic research methodology we have already used in this study.

<著者略歷>

박명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봉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정권

서울 대학교 지질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회계학 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2008년 12월 22일 인쇄
2008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주) 천세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19-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